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안내서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안내서**



# 업무매뉴얼

## 이렇게

## 활용하세요!

1. 본 안내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안내서에 제시된 업무별 처리 기준과 절차가 기존 사업 지침 등과 다른 경우 본 안내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3. 본 안내서는 현장에서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으로 활용합니다.
4. 본 안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점검 기준이 됩니다.

## content

<b>I.</b>	<b>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b>	
	1. 추진 배경	8
	2. 추진 방향	9
	3. 지역협치 이해	12
<b>II.</b>	<b>지역사회혁신계획 개요</b>	
	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	28
<b>III.</b>	<b>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이해</b>	
	1. 계획수립과 숙의·공론 과정	34
	2. 추진체계 구축 과정	56
	3. 제도 기반 구축 과정	65
<b>IV.</b>	<b>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과정 이해</b>	
	1. 계획실행과 숙의·공론 과정	70
	2. 추진주체 운영 과정	75

## 부록

### 〈관련 추진계획〉

부록1. 2020 지역협치활성화 추진계획	80
1-1.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97
1-2.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	108
1-3.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 운영계획	121

### 〈서식〉

부록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서 서식	
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신청서	127
2-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논의주체 명단	128

### 부록3.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제출시 첨부 서식

3-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서	129
3-2. 자치구 협치회의 명단	130

### 〈계획서 목차 예시〉

부록4.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목차 예시	131
부록5.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목차 예시	133
부록6. 의제별 실행계획 세부목차 예시	135

### 〈운영지침〉

부록7. 2020-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137
--------------------------------------	-----

### 〈협약서〉

부록8. 협약서	146
----------	-----





I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

# 1 추진 배경

## 더 넓은 시민 참여와 더 깊은 민관 협치로

- 서울시는 민선7기,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내어주고 더 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확장되는 '시민의 서울'을 만든다는 취지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서울'이라는 시정 기조를 발표
-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넓은 참여 민주주의, 더 깊은 재정 민주주의, 더 오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략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



**더 넓은  
참여  
민주주의**

시민의 공론과 투표
• 3,000명 시민회의 운영
• 온·오프라인 공론장

**더 깊은  
재정  
민주주의**

시민이 예산 설계
• 1조 속의예산 결정
• 3,000회 속의공론

**더 오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역량 성장
• 구단위·동단위 문제해결
• NPO지원 및 제도 마련

## 2 추진 방향

### 참여로 주권을 행사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 참여에서 결정으로, 서울 정책을 투표합시다! ⇨ 시민투표의 날 신설

- ▶ 시민의 제안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시민투표의 날(9.1.) 운영
- ▶ 다양한 정책과 시민참여/숙의예산을 공론으로 결정하는 정책축제

#### 시민이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 서울 시민회의 신설

- ▶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3,000명 규모의 시민회의 구성
- ▶ 차년도 예산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과 투표 참여로 시민력 강화

#### 시민의 제안이 서울시장을 소환합니다! ⇨ 「민주주의 서울」 공론 실효성 강화

- ▶ 1,000명 공론 참여시 시장이 직접 답변(기존 5,000명 → 1,000명)
- ▶ 민주주의 서울 제안 기반 「시장-시민 정책간담회」정례적 추진

####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결정합니다! ⇨ 구·동단위 공론 활성화

- ▶ 25개 자치구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 개설, 정책 대안 마련
- ▶ 424개 동의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발굴된 의제 실행 추진

### 시민이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핵심요소	시민의 공론과 투표로 정책과 예산 결정		
목표	다양한 정책결정을	폭넓은 시민참여로	「민주주의 서울」에서 결정
추진방법	• 6,000억 숙의예산 결정	• 3,000명 시민회의 구성	• 1,000명 참여시 시장답변
	• 차년도 주요정책 결정	• 시민투표 참여	• 온오프라인 공론 정례화
	• 지역 문제 주민이 결정	• 구·동단위 주민참여	• 다양한 기관 참여 확대

## 실질적 숙의예산 추진으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예산 시민참여의 범위와 규모 확대 실시, 폭넓은 숙의 추진

- ▶ 기존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시민참여 범위 확대
- ▶ 신규·단년도 사업 → 市 모든 정책사업으로 확대
- ▶ 숙의 기간 및 숙의 횟수 확대

### 시민 역량 강화로 자율적 참여 기반 조성

- ▶ 시민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 ▶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교육과정 다양화로 시민역량 강화

### 숙의·심사체계 통합 연계 및 조례정비로 시정에 숙의예산 정착

## 실질적 숙의예산 추진으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핵심요소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

<b>목표</b>	<b>1조</b> (시예산 5%)	<b>+</b>	<b>20만명</b> (서울인구 2%)	<b>+</b>	<b>3,000회</b> (숙의·공론화)
<b>추진전략</b>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계적 추진	<b>+</b>	[시민 누구나]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대중성, 대표성 강화	<b>+</b>	[숙의·공론] 숙의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숙의예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76b82a;"><b>시범단계('19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예산 2천억원</li> <li>- 13만명 참여</li> <li>- 300회 숙의공론</li> <li>- 환경, 여성, 복지, 민생경제 사회혁신, 시민건강 등 6개 분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76b82a;"><b>확대단계('20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예산 6천억원</li> <li>- 17만명 참여</li> <li>- 1,500회 숙의공론</li> <li>- 안전,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 확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76b82a;"><b>정착단계('21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예산 1조원</li> <li>- 20만명 참여</li> <li>- 3,000회 숙의공론</li> <li>- 시정 전 분야로 확대</li> </ul>
--	--	--

## 시민역량 성장지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주민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역량 제고로 마을 문제에 대한 결정력 강화

- ▶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확대 추진
- ▶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확대
- ▶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로컬랩 운영

### 주민 중심의 지역의제 발굴·해결로 지역사회 성장 지원

- ▶ 25개 자치구별 협치계획 수립·실행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경험 축적
- ▶ 민·민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 기반 마련

- ▶ NPO 활동을 지원하는 권역 NPO센터 확대
-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조례, 종합계획 등) 기반 마련

## 시민역량 성장지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핵심요소

시민의 참여경험을 통해 시민역량 성장

목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지역의제 스스로 해결	+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방법	·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시행		· 제도적 기반(조례) 마련
	·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 민·민협력 기반 마련		· 권역NPO지원센터 확대
	· 로컬랩 도입		· 협치 교육 실시		· 사회협약 및 협치평가 실시

## 3 지역 협치 이해

### 1.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이해

#### 지역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 서울시의 협치정책은 자치구라는 지역 현장에서 실현되므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간 협력과 노력이 필요

**시(市) 역할** : 자치구별 지역 협치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구(區) 역할** : 지역협치 체계 구축,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지역 민간단체와 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등

- 협치기반은 협업, 자치, 분권을 지향하는 정책이 갖추어질 때 가능함

#### 협업

- 행정의 부서칸막이 및 민간 단체 간 칸막이를 극복하여 관-관, 민-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부서와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관의 협력이 필요

#### 자치

-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 결정권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참여범위 확대가 필요

#### 분권

- 정책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자치구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관련한 많은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
-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분권 이양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 서울시는 협업, 자치, 분권의 세 지향점을 기반으로 자치구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정책명	지원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구의 주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협치전략사업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민민협력 기반조성	시민 주도의 협치환경 조성을 위한 민민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동가 발굴 및 육성
지역협치교육	'협치'의 개념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 2. 자치구 협치기반과 자치구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 추진배경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운영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분야 간 융합과 협력 촉진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실질적 숙의예산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예산 결정권 강화
  - 사회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확대

### 추진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 단위 유형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으로 일괄 통합하여 추진, 20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개선으로 사업운영의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가치·목적 실현, 내실 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도입·개선함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도입
  - 시민과 행정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필요
  - 현재의 생활형 단위사업 중심의 의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을 도입

## 추진계획

### 〈사업목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제도 등)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
- 자치구별로 축적한 민관 협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의 복잡·다양한 주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력을 도모

### 〈개념〉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3년 전략계획 + 1년차 실행계획(2021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

### 〈서울시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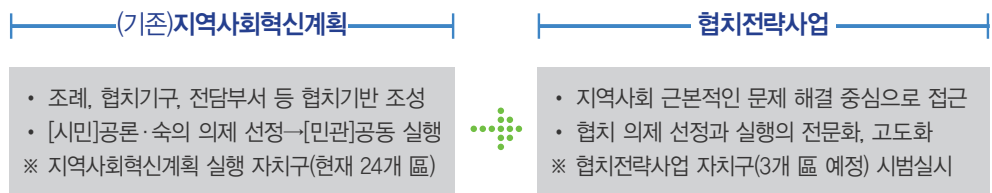
- 예산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예산(구별 10억원 이내)
- 각 자치구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전략사업

#### 추진배경

- 시민과 행정 간의 협치 기반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 필요
  - '16년도 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 자치구의 협치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협치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을 축적하여 민·관 간에 풍부한 협치 경험 축적
  - 이러한 협치 경험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으로 성숙될 수 있게 하는 본격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
  
- 협치전략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제고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의 시민제안과 공론·숙의를 거친 일반적인 의제 설정 및 실행 과정만으로는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법 제시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협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더욱 유기적인 협치 방식을 제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도모 필요



#### 추진 방향

-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행정의 다양한 전문 자원의 확보
  - 자치구 내 행정의 정보·실행력, 시민사회의 활동성, 대학·연구 기관의 학술 업적, 주민의 현장·대표성 등 다양한 전문 자원을 확보 및 연계하여 추진
  
- 자치구의 현행 정책 기반을 연계·활용하여 민관 협치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 전략 의제와 관련한 區의 기존 행정 정책 및 민간의 활동 경험을 파악하여 협치전략 사업과 연계하고, 향후에는 일반 시민이 활용 가능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구축
  - ※ 자치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격의 일반 사업은 제외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혁신적 방법론을 연계하여 시민을 문제해결 당사자로 육성
  - 로컬랩, 리빙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계·활용하고 전문성과 활동성 등을 보유한 시민 주체의 발굴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
    -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로컬랩),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접목(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안을 실험 중임
- 서울시정 주요 계획과 연계·협력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통합적 접근
  - 서울시의 주요 정책(관련 사업부서)과 연계·협력을 맺거나 시·구·지역사회 간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의 효율화 및 검증된 해결법의 확대와 확산

##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지역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협치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협치 전략 모델의 제시 및 확산

### 〈사업목표〉

- 자치구에 축적된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 고도화
  - 민간과 행정 내외의 다양한 전문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여 협치의 유기적 발전 도모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 창출
  - 실증적·구체적인 변화목표(Outcome)를 설정하여 협치 실행의 효능 가시화

### 〈계획의 주요내용〉

- 공론·숙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의제 발굴 및 선정]
- 지역 커뮤니티의 수요 및 전략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한 [문제 진단 및 정의]
- 협치전략사업 실행에 따른 정성·정량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변화 목표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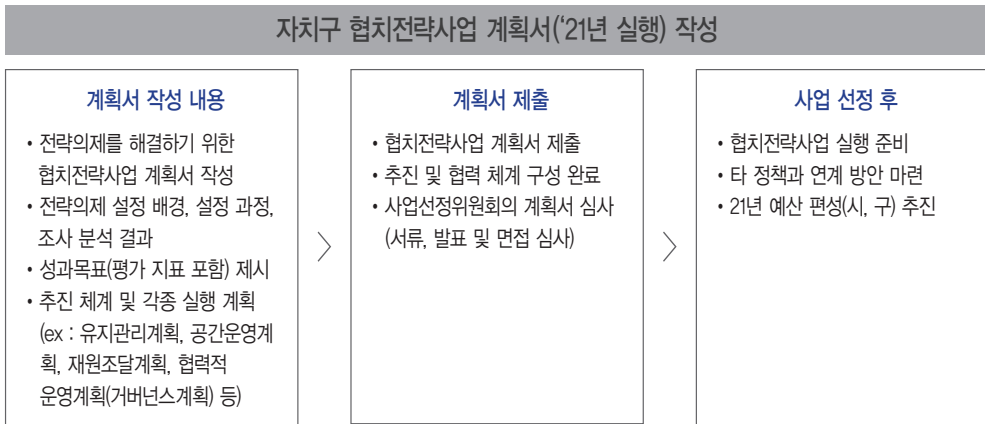
### 〈선정방식 및 지원규모〉

- 각 자치구 신청서류 접수(사업신청서, 협치전략사업계획서 등)
  - 접수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전검토 의뢰 가능
-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후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3개구, 각 5억원 내외 지원)

### 기대 효과

- 지역협치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적인 협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을 실행하여 현재까지 자치구에 마련된 협치 체계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민간의 협치 역량의 강화
- 사회적경제, 로컬랩, 서울형 주민자치 등 지역 사회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활용·연계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분야 저변에 사회혁신 성과 전파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구성 개념도



## 4. 지역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민협력 기반조성 지원

### (1)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민선5기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를 필두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예산, 민주주의 서울(숙의·공론장) 등 다양한 협치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시민 주체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 지역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민·관 협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추진 방향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더 많은 시민 주체가 참여하여 시민 간 공동의 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지역 현장 수요에 따른 시민 성장 목표의 실현과 연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 간의 능동적인 교류·협력 기회의 제공
-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연대 체계 구축,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 모델의 제시 및 확산
-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성장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지역의 민·관 협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자치구 확대

## 추진 계획

### ● 사업목표

- 지역 사회의 시민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정책 연구 및 공론화,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의 조성

###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선정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서는 선정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 확인

### ● 선정규모 : 10개 내외(자치구별 1개)

###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최대 5천만원이내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 《 사업 내용 예시 》

#### ①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

- 지역 시민사회 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집담회, 조사 사업
- 지역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치 의제 간 융합, 시민자산화, 동 주민자치 등 정책 개발 및 공론화
- 지역 사회의 새로운 주민, 활동가 그룹(분야)의 발굴 및 육성
-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송년회, 한마당, 공동워크숍 등 각종 연대 행사

#### ② 시민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활동 기반의 형성

- 지역 내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추진 기구의 설립
- 지역 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기획 및 수익 모델의 개발·실행
- 지역 시민 공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조직 설립·운영
-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통합 교육기관 설립
- 주민 및 공익활동가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구축
- 지역 의제 개발 및 정책화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시민정책 연구소 설립·운영

#### ③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2)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시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과 협치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공동의 협치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별로 지역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향상시켜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시민 주도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성장 과정을 강조한 맞춤형·단계별 지원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운영 및 민관 합의제 방식의 사업 성과평가

### 추진 계획

- 시민협력플랫폼 개념 및 역할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인력(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역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개요
    - 지원자격 : 현재 자치구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단체,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의 컨소시엄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억원(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책임자 활동비, 사업비 등
- ※ '19년 사업 선정(4개구:강서·구로·도봉·양천, 20년 12월까지 실행)을 끝으로 사업 종료 예정

### (3)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사업

#### 추진 배경

-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공공분야의 다양한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와 사회진입 역량을 제고
- 지역협치 활성화로 지역시민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 증가와 시민사회 단체 간 공동 의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 요구
- 지역사회공익활동가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시니어 및 지역주민 등에게 지역 현장의 일 경험을 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범위 확장
  -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역량을 제고

#### 추진 방향

- 지역사회 공통 의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정책인 시민협력플랫폼, 민민협력기반조성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가를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의 활동을 통해 지역단체 간 상호 신뢰형성과 연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역량 성장과 지역협치 정책 활성화

#### 추진 계획

- 활동인원 : 총 18명
- 활동내용 :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 공통 의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 협력사업장 모집 및 협약
  - 모집규모 : 총 14개 사업장
  - 자격요건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에서 합의된 단체

## 5. 지역협치 주체들의 협치역량강화를 위한 서울협치학교 [지역분야]

### 추진배경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마련
- 그러나 아직은 협치 경험 부족으로 민관의 상호 인식차가 존재하고, 각 주체별 협치 실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자치구 단위 협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협치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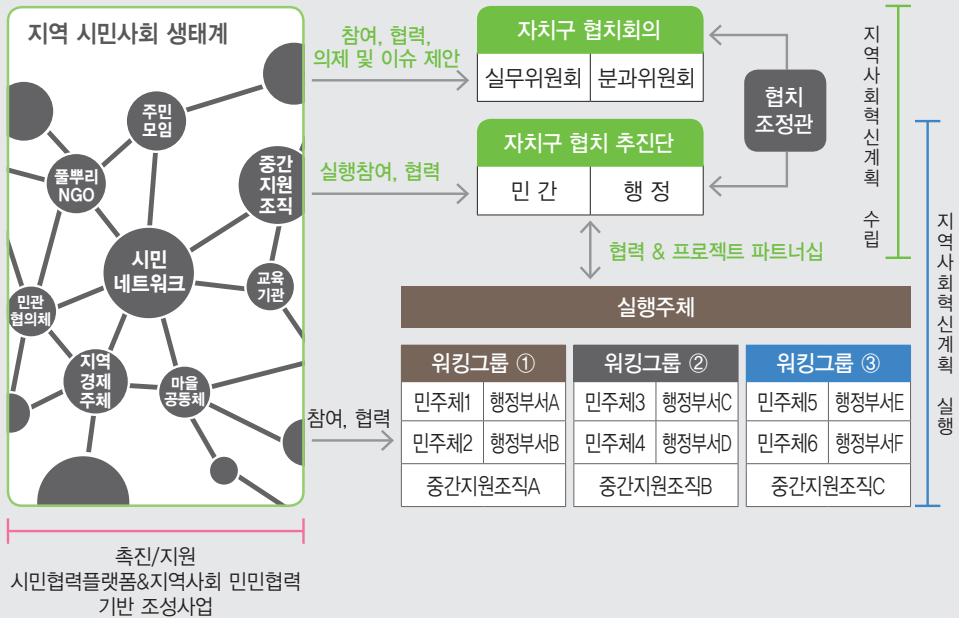
- 협치 실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협치 주체의 체계적 성장 지원
  - 다양한 협치교육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지속가능한 지역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확장
  - 상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광역의 교육 지원으로 성과 확산과 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
  - 현장 활용 가능한 교육 도구 및 관련 콘텐츠 제작으로 협치 과정 기록 및 성과 확산 도모

## 추진계획

- 지역협치교육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확장
  - 지역협치교육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치학교 전문가 네트워크, 유관기관 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지역협치교육 담당자 간담회, 협치교육 사례 공유회, 기타 협력 사업 등
  - 현장 활용 가능한 공동교안 및 교육 도구 개발
    - ▷ 수요조사 결과 반영한 교과 개발 및 놀이 형태의 실습용 교육훈련 보조자료 제작
  -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협치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지역협치교육 매뉴얼 제작, 협치 사례서 및 영상, 협치 리포트 발간 등
  
- 지역협치 주체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협치교육
  - 협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촉진자 양성과정, 협치지원관 성장 교육, 협치강사 양성 교육 등의 과정 운영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시민사회 생태계와의 관계



- 〈시민협력플랫폼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여러 시민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공동의 이슈를 생산하는 활동을 추진
-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은 지역협치의 지속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협치의 실천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
- 그러므로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 추진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주체 등 협치 기구를 구성할 때,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풍부한 관계망 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시민협력플랫폼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과정은 상호 동반적 관계로서 활성화되어야 함



# II

---

지역사회  
혁신계획  
개요

## 1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

### 개념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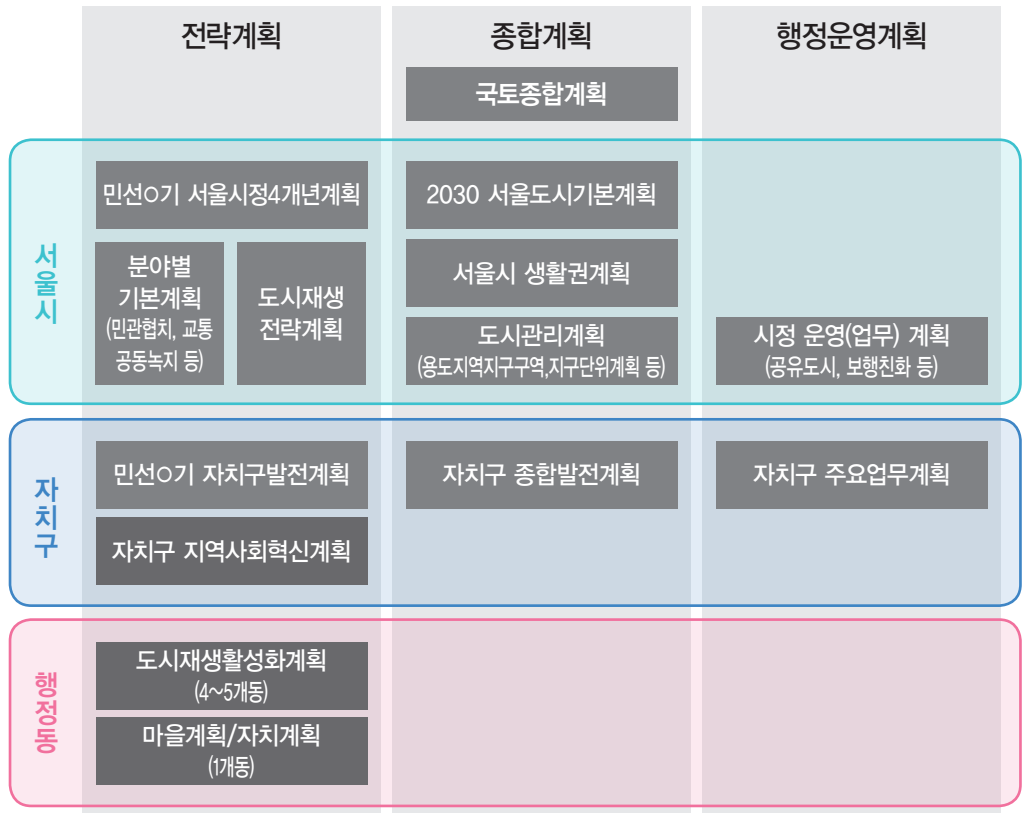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
-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 및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표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쌓아나가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인력 등의 제도)을 조성
- 자치구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관련 계획과의 관계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위상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자치구 발전계획과 유사한 위상의 성격을 가짐
- 자치구 발전계획과 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민·관 협치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연계·융합이 가능한 정책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양한 계획과의 관계〉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격

### 전략적 계획

-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각종 현안문제를 진단,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상향적 계획

- 서울시 주도로 설계한 공모 사업이 아닌 자치구 주도로 설계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실행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

### 참여적 계획

- 공공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주체들이 주도하여 공공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

- 계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민간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방안 마련 필요

### 융합적 계획

-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민·관 협력 정책(사업)들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수립

- 다양한 행정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 시민참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 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회의,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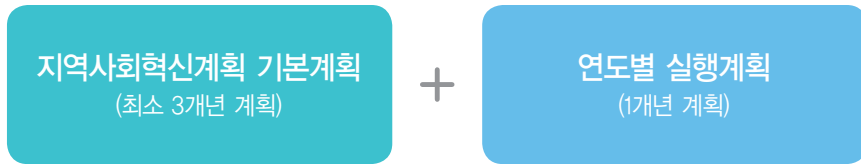
###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기존 자치구 사업에 대한 민·관 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의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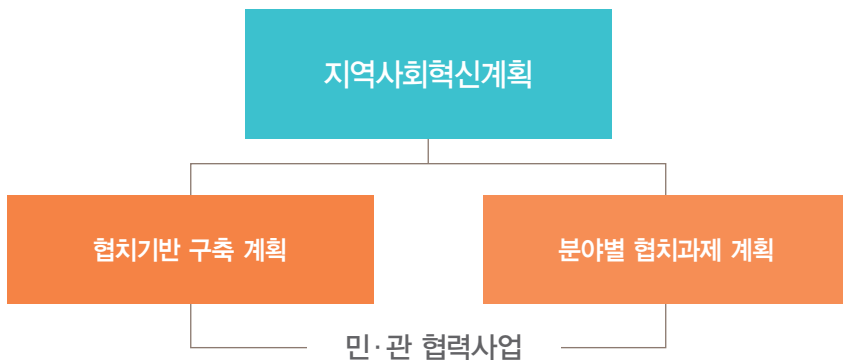
- 최소 3개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되 계획에 제시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지역에 정착되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중기적(5년 또는 7년) 관점에서 계획 수립 필요
- 3개년을 최소 단위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매년 이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1개년)을 수립



3개년을 최소 단위로 한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과  
매년 이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1개년)을 수립

## 계획의 내용적 범위

- 자치구에서의 협치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협치기반 구축 계획'과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은 민관협력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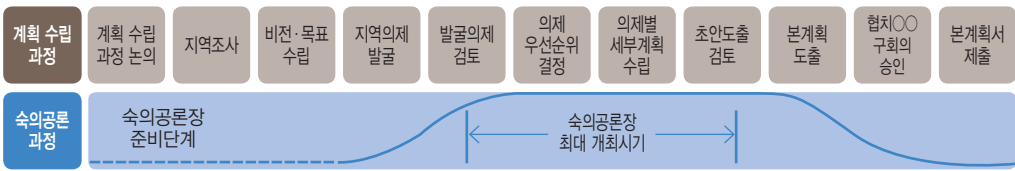
---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과정  
이해

# 1 계획 수립과 숙의·공론 과정

**계획수립 과정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용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과정**

**숙의·공론 과정 :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시민 및 관련주체와 행정에게 진행내용을 알리고,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 계획수립 과정 논의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 활동내용
  - 자치구 협치실태와 전년도 계획 수립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해당 자치구 만의 계획수립 프로세스 설계<sup>1</sup>
  - 신규 자치구의 경우에는 민·관 합동 TFT 구성안, 구조, 운영방식,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향후 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치구 협치회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

<sup>1</sup> 본 안내서에서 제시한 계획수립 프로세스는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민·관 합동 TFT에서 논의하여 각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음

● 숙의·공론

- 향후 지역의제 도출과 의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숙의·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

참고

공론, 숙의 개념<sup>2</sup>

**공론이란?**

공적 의제에 관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단순히 조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파악한 여론과 달리,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의 과정을 거친 깊은 토론, 숙의를 통해 재형성된 여론

**공론화란?**

- 공적 의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
- 시민사회적 차원의 공론화 : 공공성을 지니지만 논의되지 않는 의제를 여럿이 의논하는 것
- 행정용어로서의 공론화 : 공공정책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집하는 과정

**숙의(Deliberation)란?**

숙의, 심의, 토의 등으로 번역되는 개념으로 시민, 이해당사자, 활동가, 전문가, 국가 등에 의한 깊이 숙고하는 논의

**숙의민주주의란?**

시민주도적 참여에 의해 공론장에서 숙의를 거친 공론화라는 의사수렴 제도 및 실천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2 민주주의기술학교(2019), 2019 열린소통포럼 연구보고서

## 지역 조사

###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 ● 활동내용<sup>3</sup>

- 자치구의 일반현황과 협치 관련 자원현황을 파악
  - ▶ 일반현황 : 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해 조사·수집할 수 있는 자연, 인문, 사회 현황, 자치구의 공간적 위치, 면적,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 ▶ 자원현황 : 협치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협력·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관련기관, 공간자원 등 현황 파악
- 자치구의 여건변화와 이슈 파악
  - ▶ 자치구의 다양한 환경 파악과 분석을 통해 자치구의 여건변화, 동향과 문제적 상황(이슈)을 파악
- 관련계획과 관련제도 검토
  -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해야 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
  -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여건 검토(관련 조례 등)
- 행정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 정책과 사업의 현황 파악
  - ▶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관협력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 지역 시민단체, NPO단체, 주민모임등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목록화하여 현황 파악
  -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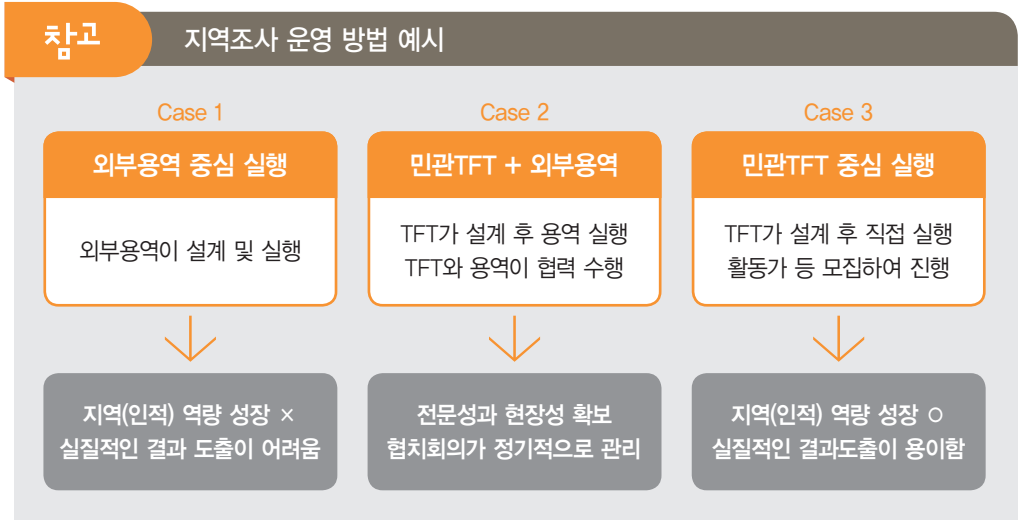
<sup>3</sup> 지역현황조사·분석의 주요 내용은 안내서 내용을 참고하되,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행정과 민간이 '협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인터뷰 조사 등을 실시
  - ▶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 ▶ '협치'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
  
- 행정과 민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주요 과제 및 정책 수요 조사
  - ▶ 지역사회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과제 및 정책 수요조사
  
- 자원 목록 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조사한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언제든, 누구든 자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공개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숙의·공론**
  - 지역조사 과정은 협치현황 분석과 지역자원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관 직·간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짐. 이들에게 협치정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 있을 숙의·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숙의·공론장을 어떠한 규모, 범위,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조사 항목과 내용〉

항목	조사내용·방법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공간적 위치, 면적,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li> <li>• 인구·가구 구성, 세대전출·입, 경제활동인구, 고령화비율, 취약계층 비율, 범죄율, 보행량 등 지역문제 파악에 필요한 기초현황</li> <li>• 위와 같은 지표·통계 자료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과 이슈를 파악</li> </ul>
인적 자원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위원회, 사업 참여자, 각종 단체 대표자, 주요 기업 대표자 등의 다양한 명단을 통해 확보</li> <li>• 민간: 단체의 회원, 행사 참석자 등의 명단을 통해 파악</li> </ul>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워크숍 등을 통해 문헌조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별한 재능과 역량을 보유한 주민의 명단을 확보</li> </ul>
관련 기관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단체, 사업 참여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민모임 현황, 예산 자료와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li> </ul>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워크숍 등을 통해 문헌조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주민 모임, 사회적 기업 등의 명단을 확보</li> </ul>
공간 자원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구유재산, 공유재산 민간위탁,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 등을 통해 파악</li> <li>• 민간: 단체의 공간, 공유 공간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li> </ul>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한바퀴 자원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문헌조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활용가능한 유휴부지, 주민들에게 가치있는 공공공간 등을 파악</li> </ul>
협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의 현황 파악</li> <li>•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현황</li> <li>• 행정과 민간이 '협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인터뷰 조사 등을 실시</li> </ul>
관련 계획과 제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여건 검토(관련 조례 등)</li> <li>•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해야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li> </ul>
주요과제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주요 사업, 서비스 등의 수요 파악, 자치구 주민들이 원하는 주요 사업, 서비스 등을 설문조사, 인터뷰, 민원 신청 내용 등을 조사</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분석 항목</li> </ul>





## 비전·목표 수립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 활동내용
  - 도출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 목표를 수립
    - ▶ 지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현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고 비전과 구체적인 달성 목표 제시
    - ▶ 목표는 3년 전략계획의 수준에 맞추어 설정함. 3년동안 실행할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단기적이거나, 단순하게 설정할 경우 협치 계획으로서 공감이나 명분이 낮아질 수 있음
    - ▶ 지금까지의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속의·공론
  - 지역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자치구의 비전과 목표를 논의할 수 있는 속의·공론장을 개최함



TIPS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 중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때는 지역 조사, 협치회의(민관TFT회의), 권역별 주민공론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 의제발굴

###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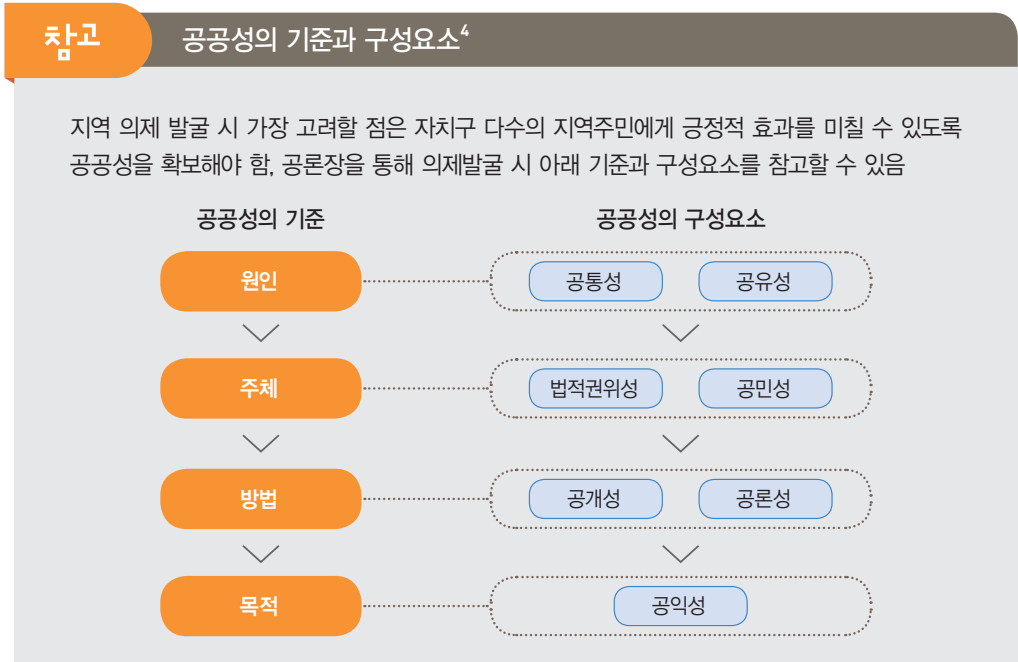
### ● 활동내용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치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의제를 도출
- 행정부서를 대상으로도 의제 도출과정을 진행하여 신규 정책(또는 사업)이나 이미 추진 중인 정책(또는 사업) 중 협치적 실행과정을 추가·보완 하였을 때 기대효과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기존 정책(또는 사업)이 보완·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 상위계획,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하여 협치적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 또는 정책이 파악되었다면 해당 사업 또는 정책을 지역사회혁신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 숙의·공론

-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다양한 규모와 범위의 공론장을 개최하여 의제를 도출
  - ▶ 회의 규모와 참석자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의제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여러 규모와 형태의 공론장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
  - ▶ 공론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적극 수용
  - ▶ 의제 도출 시에는 의제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 없이 민과 관이 자유롭게 개선·해결하고 싶은 의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

참고		의제발굴을 위한 공론장의 다양한 형태와 참여주체						
규모별 공론장	포커스 그룹 워크숍	분야별 공론장	동단위 공론장	권역별 공론장	열린 공론장	세대별 공론장	위원회별 공론장	기타
다양한 참여 주체	지역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구의회	행정	기타	기존 위원회	기타



-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 성격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는 아래와 같은 성격이 충족되는 의제여야 함
- ① 개방성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발굴한 의제
  - ② 숙의성 : 발굴 의제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숙의한 의제
  - ③ 공익성 : 특정 소수 단체 또는 주민그룹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
  - ④ 민-관 협력성 :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의제

III. 지역 사회 혁신 계획 수립 과정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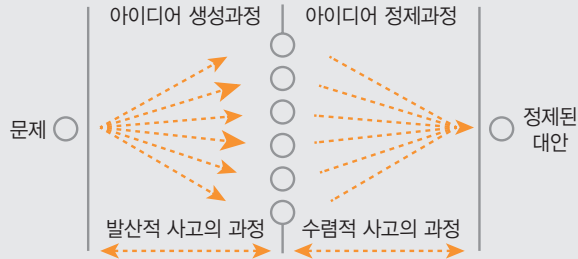
4 민주주의기술학교(2019), 2019 열린소통포럼 연구보고서

**참고**

**의제도출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법**

❖ **브레인스토밍 기법**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가 많은 양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
- 될 수 있는 한 많은 아이디어 및 대안을 생산하는 발산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아이디어에 대해 분류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유도해 내도록 함
- Brainstorming 4대 규칙
  - 비판금지
  - 질보다 양
  - 엉뚱 아이디어 환영
  - 편승 가능



❖ **거닐며 의견적기 기법**

- 짧은 시간에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기법
- 소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전에 참석자 전체로부터 input 정보를 얻는 방법
- 마을의 자원조사에 : 마을 SWOT 분석, 강점-약점-기회-위협)시 활용 가능함
- 진행 단계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플립 차트(또는 벽에 빈 종이)를 배치함
  - 각 주제를 잘 볼 수 있도록 플립 차트 상단에 제목을 크게 기록함
  - 참석자들이 포스트잇을 들고 각 주제를 돌아다니면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서 붙이면서 돌아다님(이때 개수를 지정해줄 수도 있음. 포스트잇은 한장에 하나)
  - 의견을 적을 때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의견을 살펴보면서 적을 수 있음.
  - 참석자들이 모든 주제를 다 돌아다니며 의견을 붙일때까지 진행함(시간 지정)
- \* 유의사항 : 참석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니라 서서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적도록 유도함

**발굴의제 융합·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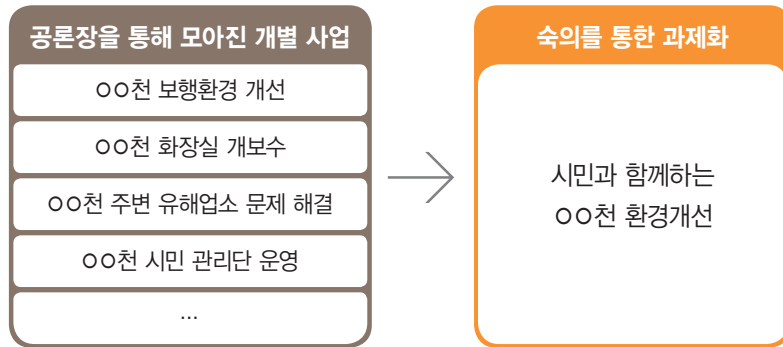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 **활동내용**

- 공론장을 통해 많은 수의 개별적 사업들이 발굴되었다면 발굴한 의제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적합한 의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관련한 개별 사업을 융합하여 과제화 시키는 속의 과정이 필요함



- 「2020 서울시 시민속의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의 「참여예산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업이 특정 자치구의 사업으로 판단된 경우 이를 해당 구로 이관하기 때문에 해당 제안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지 아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sup>5</sup>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sup>6</sup>은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의제의 성격을 아래와 같은 4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제 검토, 속의 과정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의제는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함

- ① 개방성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발굴한 의제
- ② 속의성 : 발굴 의제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속의한 의제
- ③ 공익성 : 특정 소수 단체 또는 주민그룹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
- ④ 민·관 협력성 :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의제

● 속의·공론

- 공론장을 통해 도출한 의제에 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적합한 의제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깊은 속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제 우선순위 결정 공론장(열린 공론장)'에 올린 의제들을 결정함
  - ▶ 관련부서, 협치회의 및 분과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협치체로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의제를 선정하도록 함
  - ▶ 자치구 협치회의 분과에서 제안사업을 논의할 때 제안사업과 관련한 부서, 관련 전문가,

5 이관사업 검토과정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로 적합하지 않은 이관사업이 그대로 지역사회혁신계획 내의 의제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함

6 p.137 「2020-2021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참고

- (필요시)제안자를 초청하여 분과 확대회의의 형태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
-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목표와 의제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숙의 과정에는 도출한 의제에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제안자가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본인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변형·발전 되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숙의의 결과를 제안자가 알 수 있도록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필요함

**참고**

(은평구) 참여예산과제와 협치과제를 서로 연계하여 진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민견문수렴 (1~2월)	정책과제화 (3월 중)	과제검토 및 심사 (3~4월)	우선순위 투표 (5. 11.)	과제숙의 및 정책사업 도출 (5~6월)
동 공론장, 주제별 공론장, 청소년 공론장, 온·오프라인 등으로 주민제안 접수	제안의제 분류 및 병합 (참여예산-협치 과제 발굴 연석회의 + 퍼실리테이터)	1. 부서검토(공동) 2. 주민총회 상정 과제 검토 및 선정 1) 참여예산 과제 : 참여 예산 분 과 위원회 2) 협치 과제 : 주민총회 상정 검토 TF 회의	1. 사전투표 2. 주민총회 (2019.5.11.) ※ 참여예산, 협치형 나누어 투표 (각각의 특성을 보장)	민관공동 TF 구성하여 사업 및 계획 구체화
참여예산+협치 공동진행	참여예산+협치 공동진행	구분하여 각각 검토	참여예산+협치 공동진행	과제별 진행

**참고**

(강서구) 각 분야와 권역을 아우르는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친 의제선정 및 계획 수립

공론장	분과(5개) 실행위원회	권역별 협치테이블	분과별 50인 + 협치테이블	강서구협치 운영단 회의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의제 선정단	강서협치 통통 한마당
일시	2월 ~ 3월	4월 2일 / 4월 4일(2회)	4월 9일 ~ 4월 18일(5회)	4월 30일	5월 21일	6월 11일
구분	공론 / 숙의	공론	공론 / 숙의	숙의	숙의	공론 / 숙의
내용	분과별 협치 의제 발굴	권역별 협치 의제 발굴	분과별 협치 의제 우선순위 선정	분과별 협치 의제 상위 3순위 중 2020 년 실행 협치의제 최종 선정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구기관 사업 중 협치의제 선정	2020년 실행 협치의제 최종 우선 순위 선정
의제수 (선정/논의)	4개 / 6개	1개 / 33개	1개 / 26개	6개 / 15개	2개 / 23개 (부서 검토 적합)	8개

## 의제 우선순위 결정

###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 ● 활동내용

- 도출한 의제의 중요도, 공공성, 시급성, 단기간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
- 도출한 의제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언제든, 누구든 지역사회의 현안 의제를 확인 하고, 향후 계획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의제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의제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의 평가·환류 과정에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 또는 자치구의 다른 사업이나 민간단체 추진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현안의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함

### ● 숙의·공론

-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론장(열린 공론장)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의제를 결정하도록 함
  - ▶ 개방성 확보를 위해서 다수의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하여 대규모 공론장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 ▶ 공론장에 참석하기 전 논의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참석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의제의 제안자가 열린 공론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



**•비전·목표·의제 간 정합성 유지**

통합적 계획을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비전, 목표, 의제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확보**

분과회의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구성원을 모집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대공론장, 사전 정보 제공 필수**

의제를 최종 선정하는 대공론장(100인 원탁회의 등)의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사전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동영상, 의제설명자료 등)를 제공하여 충분한 학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의, 공론장 개방성 확보**

모든 단계의 숙의·공론장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개방성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은평구 의제 우선순위 선정 사례**

- 지역의 분야별, 권역별 다양한 숙의·공론장을 통해 도출한 의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열린공론장을 개최
- 공론장 참여자들에게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해야할 기준을 제시함
  -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관이 협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도록 함

사업의 타당성	
항목	선정기준
공익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시급성(중요성)	다른 것보다 우선 추진해야 하는가?
수혜대상	사업 실행 시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목표 달성도	사업기간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인가?
효과성	주민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나?
협치의 효과성	
항목	선정기준
협치성	민관협력의 필요성 및 민관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협치파트너 간 사업수행 의지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 의제별 세부 계획 수립

### ● 추진주체 협치

- 자치구 협치 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민·관 워킹그룹

### ● 활동내용

-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협치기반 구축 계획’과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각 세부계획은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핵심 목표, 구체적 실행내용,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을 중심으로 수립함<sup>7</sup>
  - ▶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를 어떻게 구성·운영할지에 대하여 깊이있게 논의해야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실제 실행과정에 참여할 민·관 주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에서 실행 중인 다른 계획 및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유관 정책들은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관련 계획과 사업의 예시

관련 계획	자치구 기본계획, 00년 주요 업무 계획,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찾동 마을계획, 도시재생계획, 서울시 생활권 계획 등
관련 사업	중앙부처 사업, 서울시 사업, 자치구 사업, 민간 사업의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 검토 (예: 혁신교육지구 사업, 사외적경제 특구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주거재생 사업, 청년지원 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공원 녹지조성 및 운영 사업 등)

### ● 숙의·공론

- 세부 추진계획은 구체적 실행 사업 및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므로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주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정에 의제의 제안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실제 실행과정에 참여할 민·관 주체가 함께 계획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sup>8</sup>**

1. 불가 항목	
구 분	내 용
(1)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 공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기관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 접 소요되는 사업비 외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인건 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 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민 공유공간 외 자치구 공공청사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의 단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자치구 공공청사의 단순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위한 경우 를 말한다. ② 단, 공공청사의 특정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기능변경 하거나, 기존 주민 공유공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비, 사업비는 가능하다.
(3)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 우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단체 또는 법인의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 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품판매가 주목적인 사업의 예산편 성은 불가하다	①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의 예 산 편성은 불가하다.
(5) 법령으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산은 매년 시·구 간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이므로 상위 법령에서 강제 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2. 유의 항목	
구 분	내 용
(1) 인건비성 경비(회의 수당, 강사비 등 은 해당하지 않음)가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	① 특정 단체 또는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 추진 시 민·관 협력을 촉진·관리·조정·자문하기 위 한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③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p>(2)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p>	<p>① 행정이 독자적으로 시설비 등을 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②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편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전반을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의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세부사업별 총 예산의 70%를 넘을 수 없다.</p>
<p>(3) 민간이전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p>	<p>① 행정이 일방적으로 민간이전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 성격상 민간이전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③ 민간이전 편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전반에 대해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민간이전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세부사업별 총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⑤ 민간이전이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을 의미한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p>
<p>(4)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p>	<p>① 재산성 물품구입의 경우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구입한 재산성 물품은 '구' 소유로 귀속하며, 자치구 물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한다.</p>
<p>(5)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① 사업비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가능하며 가급적 '구' 예산(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명의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참고)</p>

## 초안 도출, 검토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 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민-관 워킹그룹
  
- 활동내용
  - 의제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취합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 내 부문별 계획으로 작성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각 의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하나의 계획으로서 통일성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함
  - 관련 의제 전문가, 계획 전문가 등의 자문·컨설팅을 통해 계획 내용의 완결성을 확보
  
- 숙의·공론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초안을 정리하여 의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각 그룹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근린, 동, 구 단위의 공론장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초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오프라인 공론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자치구 행정과 민간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채널과 네트워크를 통해 계획의 초안이 많은 주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본 계획 도출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협치 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민·관 워킹그룹
  
- 활동내용
  - 초안 검토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최종 계획서를 완성함

## 자치구 협치회의 승인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 활동내용
  - 민간, 행정, 의회로 구성된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
  -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별 실행주체, 행정부서, 민간단체 등 관련 주체들과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여 향후 실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 숙의·공론
  - 최종 승인·결정한 계획을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근린·동·구 단위의 여러 주체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

**참고**

**2019 강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b>협치 의제 발굴</b>	분과별 실행위원회 운영(20회) (201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민·관 협치적 논의를 통한 분야별 의제발굴 숙의</li> <li>• 구성 : 협치위원, 분야별 활동가, 주민, 관련 공무원 등</li> <li>• 내용 : 민·관 협력 파트너십 만들기, 분야별 협치 의제 발굴</li> </ul>
	권역별 협치테이블 (2회) (2019. 4. 2. /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민·관 협치적 논의를 통한 의제발굴 권역별 테이블</li> <li>• 대상 : 2개 권역(1권역 10개 동) 지역주민 등 200여명</li> <li>• 내용 : 권역별 협치이해 교육 및 의제발굴 공론</li> </ul>
	분과별 50인+ 협치테이블(5회) (2019. 4. 9. / 4. 11. / 4. 12. / 4. 16. /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민·관 협치적 논의를 통한 의제발굴 분야별 테이블</li> <li>• 구성 : 협치위원, 분야별 활동가, 주민, 관련 공무원 등</li> <li>• 내용 : 분과별, 권역별 협치 의제 공유·심화 검토, 의제 우선 순위 선정, 다양한 분야·주체가 협업이 필요한 의제 논의</li> </ul>
	시민참여예산 사업 검토단 운영 (2019.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민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li> <li>• 구성 : 협치위원, 분야별 활동가 등</li> <li>• 내용 : 구이관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협치 의제로 추진 가능한 사업 논의 및 의제 선정</li> </ul>
<b>전략 계획 수립</b>	민·관 협력 워킹그룹 (21회) (2019.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민·관 실행조직으로 의제별 전략계획을 수립</li> <li>• 구성 : 협치위원, 의제별 활동가, 주민, 의제 관련 공무원 등</li> <li>• 내용 : 선정된 의제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li> </ul>
	<b>우선 순위 결정</b>	강서협치통통한마당 (2019. 6. 11.)
<b>실행</b>		지역사회혁신과제 실행 워크숍 (2019. 8월말~9월초)
	지역사회혁신과제 실행 TFT (2019.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의제별 수립된 전략계획에 따른 실행</li> <li>• 구성 : 과제별 실행 TFT 구성원(민간, 공무원 등)</li> <li>• 내용 : 수립된 전략계획에 따른 실행 전반을 추진</li> <li>• 목적 : 의제별 수립된 전략계획에 따른 실행</li> <li>• 구성 : 과제별 실행 TFT 구성원(민간, 공무원 등)</li> <li>• 내용 : 수립된 전략계획에 따른 실행 전반을 추진</li> </ul>
	강서구협치회의 워크숍 (2019. 10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의제별 추진과정 공유, 조정</li> <li>• 구성 : 강서구협치회의 위원, 공무원 등</li> <li>• 내용 : 의제별 추진경과 보고 및 추진 방향 논의</li> <li>• 목적 : 의제별 추진과정 공유, 조정</li> <li>• 구성 : 강서구협치회의 위원, 공무원 등</li> <li>• 내용 : 의제별 추진경과 보고 및 추진 방향 논의</li> </ul>
<b>평가 환류</b>	성과보고회 개최 (2019. 1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협치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통한 협치 구정 확산</li> <li>• 구성 : 협치위원, 의제별 활동가, 주민, 과제 관련 공무원 등</li> <li>• 내용 : 강서협치 성과공유 및 공연 등</li> </ul>

참고

2019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구분	기간	추진과정 및 내용
계획수립 과정논의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회의 운영위 실시, 2020. 계획수립과정 등 논의(3회, 2018.12.~3.)</li> <li>• 협치회의 간담회 실시, 2020. 계획수립과정 등 설계(1.28.)</li> </ul>
비전·목표 수립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회의 분과회의 실시, 분과별 비전 및 목표 결정(2018.12~2019.1.)</li> <li>• 협치회의 비전·목표 확정(2019.3.)</li> </ul>
지역의제 도출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제안 : 92건</li> <li>① 분과위원회 4개 분과 공론장 운영(12회)</li> <li>② 주민의견청취 공론장 『협치봄봄』(3. 13.)</li> <li>• 참여예산 제안 : 시 참여예산 제안 구 이관 99건</li> </ul>
숙의·공론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참여예산 이관의제 논의기구 “참여형융합위” 신설, 숙의추진</li> <li>① 협치회의·주참 합동 워크숍 실시, 2020. 계획수립 추진방향 등 공유</li> <li>② 협치회의·주참 간담회 실시, 융합 논의기구 신설 결정(참여형융합위)</li> <li>③ 참여형융합위 구성, 융합의제 선별기준 등 결정</li> <li>④ 참여형융합위, 시참여예산 융합의제 숙의</li> <li>• 의제별 행정검토 실시(26개부서 99개 의제 검토, 38건 수행불가 판정)</li> <li>• 의제심사단 신설, 의제 심사(4.30. 2회, 협치부적합의제 11건 결정)</li> <li>• 협치회의 고도화의제 14개 확정(5.10.)</li> <li>• 협치회의 의제별 계획초안 작성(5. 20.)</li> <li>• 의제별 민관공동 협력회의 실시(5.24.), 계획초안 검토 및 협의</li> <li>• 민관공동 협력회의 결과반영, 의제별 계획서 1차 수정</li> </ul>
의제 우선순위 결정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 의제 대상 온라인 투표 실시(6.5.~6.11.)</li> <li>• 우선순위 선정 공론장 『협치 톡톡톡』 개최(6.13)</li> <li>• 온라인·현장 투표 결과 합산, 의제별 우선순위 선정(1~11위)</li> </ul>
의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치 예산조정위 신설, 의제별 예산 심의, 조정(6.24.)</li> <li>• 예산조정위 심의결과 반영, 의제별 계획서 2차 수정(6.27.)</li> </ul>
초안도출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회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심의(7.4.)</li> <li>•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시 제출(7.10.)</li> </ul>
본 계획 도출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노원구간 협의조정(7.23.)</li> <li>• 2020. 워킹그룹 구성 (의제별, 10월)</li> <li>• 2020. 실행계획서 검토, 수정(의제별 워킹, 11월)</li> </ul>
협치회의 승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원구지역사회혁신계획 2020. 실행계획 최종보고 승인(협치회의)</li> </ul>

**참고**

**2019 은평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p><b>주민의견 수렴 (2018.11) ~ 2019.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동 순회 주민제안 공론장 운영(2018.11.~20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완성된 사업제안 형태가 아닌 우리 지역의 문제와 원인, 해결방안, 미래마을 등의 간단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제안</li> <li>- 동 참여예산위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250명 참석, 662건 제안</li> </ul> </li> <li>• 주제별 공론장 운영(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의견 수렴</li> <li>- 주제 : ① 마을 내 녹지공간 가꾸기 ② 편안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③ 살아 숨쉬는 불광천 만들기 ④주민커뮤니티 활성화</li> <li>- 직장인, 청년, 일반 주민 등 80명 참석, 60건 제안</li> </ul> </li> <li>•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접수(공모, 1월~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건 접수</li> </ul> </li> </ul>
<p><b>정책 과제화 (3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분류·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공론장 결과를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분류·병합하여 정책과제화 한 후 주민제안서 작성</li> </ul> </li> </ul>
<p><b>정책과제 검토 · 심사 (3월~4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은평구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서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요청(3.15.~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부서 100건(중복검토 부서 2개 포함)</li> </ul> </li> <li>• 정책과제 심사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총회 상정 정책과제(협치) 검토 TF 회의 개최 (3.27.)</li> <li>-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3.18.~4.5.)</li> </ul> </li> <li>• 2020 은평구 정책과제(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서 관련 부서 이견 조정(4.1.~4.4.)</li> <li>• 주민총회 상정 정책과제 (참여예산·협치) 확정(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과제 6건, 참여예산과제 8건</li> </ul> </li> </ul>
<p><b>사전 주민투표 (4.15.~5.1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투표 : 4.15.~5.7. / 소식지투표 : 4.25.~5.8. / 모바일투표 : 4.15.~5.10.</li> </ul>
<p><b>참여예산·협치 주민총회 (5.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 투표결과 선정된 협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li> <li>②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녹지공간 조성</li> <li>③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활용</li> </ul> </li> </ul>



참고

2019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b>의제 발굴 (1~5월)</b>	<b>지역문제 해결형 협치이제</b>	① 「영등포1번가」 의제발굴 : 3,975건, 100대 실천과제 선정 등 ② 영등포신문고 : 청원 164건/ 10,929명 참여, 공감청원 5건 성립 ③ 찾아가는 영등포1번가를 통한 주민밀착형 현장 의견수렴 : 9회 ④ 타운홀미팅(12회/ 1,179명 참석) 및 탁트인 구청장실(18개 洞) ⑤ 영등포구협치체계 의제발굴 : 영등포구협치회의(4회/65명-누계)주민 참여단 운영협의회(4회/34명-누계), 주민참여.단(6회, 249명-누계) ⑥ 행정-중간지원조직 소통창구 「민관 네트워크 정기회의」 : 6회/157명 ⑦ 온라인 민관협치 소통공론장 및 찾아가는 의제발굴단 운영 등 ⇒ 지역문제 해결형 협치이제 발굴 : 24개 의제/ 2,485,500천원
	<b>민관협치 전략과제</b>	- 전략과제 도출 및 구체화를 위한 민-관 F.G.I 실시 : 6회/ 53명 -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전략과제 워크숍 개최 : 2회/ 80명 ※ 2019 영등포 열린공론장 미상정/ 숙의·공론을 통한 계획 수립 ⇒ 민관협치 활성화 전략과제 발굴 : 2개 의제/ 243,000천원
	<b>이관의제</b>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제안의제 이관 : 79개/ 44,758,990천원

<b>숙의 (5~6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숙의·공론을 통한 발굴의제 타당성 검토 및 융합·연계</li> <li>• 2019 영등포 열린공론장 협치이제 상정을 위한 민-관 논의구조 운영</li> </ul>		
	<b>의 제</b>	<b>논 의 구 조</b>	<b>결 과</b>
	지역의제	주민참여단, 행정 등의 협업을 통한 숙의체계 운영	7개/ 468,750천원
	참여예산 이관의제	① 시민참여예산 이관의제 민관TF팀 심의개최 ② 민관TF팀 선정 우선순위 이관의제 부서검토 등	4개/ 331,690천원
	⇒ 2019 영등포 열린공론장 상정의제 : 11개/ 800,440천원		

<b>선정 (6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영등포 열린공론장」 개최 : 주민 등 100여명 참석, 의제선정 및 토론</li> </ul> ⇒ 2019 영등포 열린공론장 의제 우선순위 선정결과 : 9개/ 713,750천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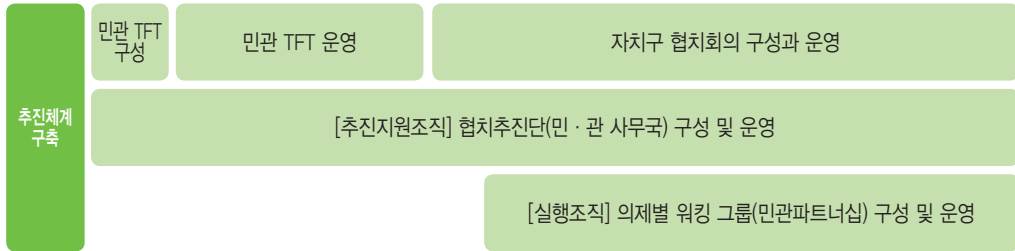
<b>구체화 (6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순위 선정 협치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및 포럼 운영</li> </ul> - 워킹그룹 중심의 포럼을 통한 숙의·공론 기반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

<b>계획수립 (7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사업 최종확정 및 계획 수립</li> </ul> ⇒ 민관협치 전략사업 : 2개/ 243,000천원, 분야별 협치사업 : 8개/ 457,000천원
----------------------	---

Ⅲ.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이해

## 2 추진체계 구축 과정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주체 형성, 지원조직 구성·운영



### 준비 주체(민-관합동TFT) 구성

**개념** | 민·관 합동 TFT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 민간의 활동내용
  -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생계와 연계된 지역 문제를 단독으로(1개 단체)만이 아닌 지역의 다른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으려 하는 주민들이 함께 만나 민·관합동 TFT를 조직화 함
  - 민간 영역별로 협력하고 있는 행정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행정과의 협력을 준비해나가기야 함
- 행정의 활동내용
  - 행정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거나 기존에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T를 조직화함
    - ▶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여러 시민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공동의 이슈를 생산하는 활동을 추진함
    - ▶ 따라서 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주체가 있는 자치구의 경우 해당 민간주체와 우선적으로 소통을 추진할 수 있음

● 민·관의 활동 내용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민과 관의 민·관 합동 TFT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논의

※ 민·관 합동 TFT는 긴밀한 논의를 위해 민·관 인원 총 수 15명 내외를 권장

## 민·관 합동 TFT 운영

● 민간의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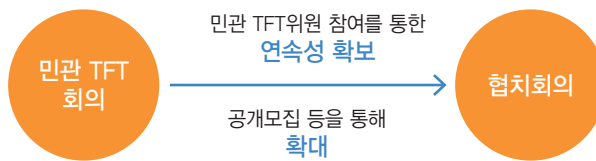
- 행정과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민·관 합동 TFT 구성하고 활동함

● 행정의 활동내용

- 민간과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민·관 합동 TFT 구성하고 활동함

● 민·관의 활동내용

- 자치구 협치회의와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중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지역조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함
- 조례의 내용과 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의제별 민·관 공론장, 위원회별 공론장, 세대별 공론장 등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속의·공론장을 설계함



TIPS

민관 TFT회의에서 자치구 협치회의로 전환할 때,

- 민관 TFT위원의 참여를 통한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치구 협치회의의 구성과 운영

**개념** | 자치구 협치회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승인하며, 지역사회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자문 기구

### ● 추진주체

- 민·관 합동 TFT (협치 준비 주체)

### ●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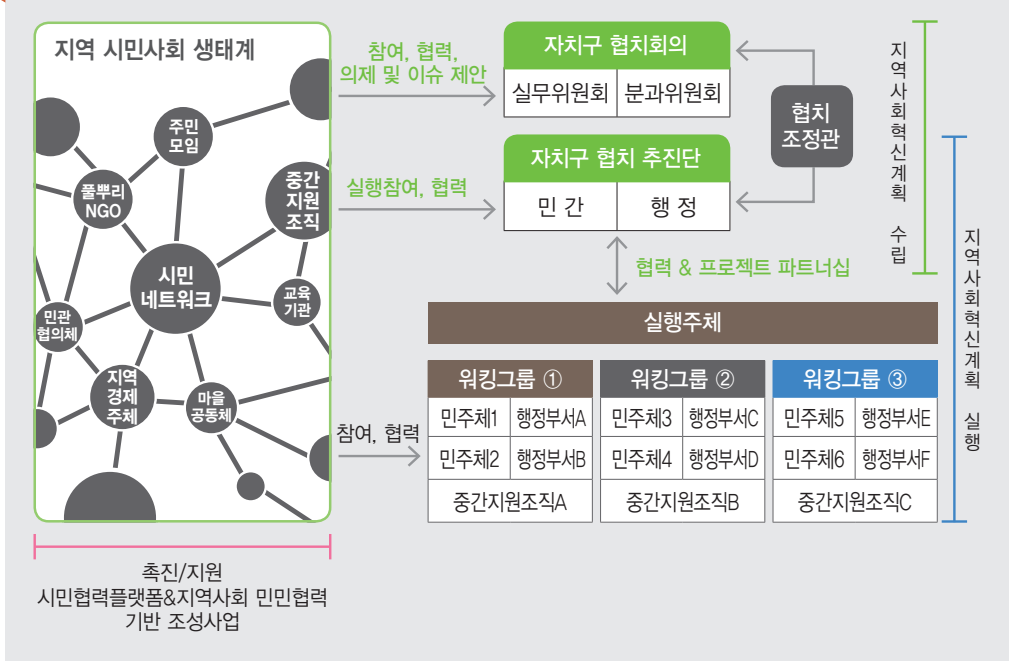
- 협치회의는 자치구의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자문 기구
- 최대한 지역의 분야를 대표하는 주체들로 구성하며, 회의 구조, 참여 주체, 규모,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 단, 전체 인원 중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도록 구성해야 하며, 특정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함
  - ▶ 협치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민간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예,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등 분야 추천)
- 자치구 협치회의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며,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구성해야 함
- 자치구 협치회의의 위원 모집 시
  - ▶ 자치구 협치회의의 위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와 환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자치구 협치회의는 자치구 협치 조례에 근거하여 인원을 구성하도록 함



**TIPS** 자치구 협치회의는

- ① 다양한 분야로 구성 ② 개방성과 확장성을 확보
- ③ 지역사회혁신계획 전 과정(계획 수립, 실행,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치구 협치회의와 지역시민사회 생태계와의 관계



## 분과 구성 및 운영

**개념** |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실행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별·의제별 논의 및 실행 기구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 활동 내용
  - 자치구 협치회의가 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 및 실행 기구
  - 자치구 협치회의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하되, 논의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의 목표에 맞는 지역사회 전문가, 활동력 있는 시민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확대 구성할 수 있음
  - 분과는 협치회의가 수행해야하는 역할별로 필요에 맞게 구성하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협치기반구축 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 수립과 실행 → 협치기반구축 분과
    - ▶ 의제발굴 계획 수립 및 실행 → 의제발굴 분과
    - ▶ 시민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시민력 강화 분과
    - ▶ 복지, 교육, 환경 등 의제별 비전 도출 및 계획 수립 → 각 의제별 분과
  - 회의 구조, 참여 주체, 규모, 운영방식 등은 분과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 단, 전체 인원 중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도록 구성해야 하며, 특정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협치추진단(민·관 사무국) 구성과 운영

**개념** | 협치추진단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실행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실행조직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또는 민·관 합동 TFT)

● 활동 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지원조직 구축
  - ▶ 지원조직은 행정의 협치팀(팀장, 주무관)과 협치조정관과 협치지원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자치구 협치회의와 민민 공론장의 원활한 소통과 공론화, 지역협치 기반 구축을 위해 ‘협치조정관’을 행정 조직 내 배치하여 민관협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지원하고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
  - ▶ 협치기반 조성 관련 : 협치회의 운영 지원, 협치역량강화 교육, 협치관련 연구 추진, 협치관련 제도 진단 등 지역사회혁신계획 세부사업 총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수행
  -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실행 관련 : 지역조사, 워크숍 및 공론장 기획과 운영, 지역사회혁신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참고

협치추진단 사무국 구성 유형 예시

유형 ① 민관 공동 사무국		유형 ② 민관 공동 사무국	
행정	민간	사무국장(민) + 협치팀장(관)	
협치팀 (팀장, 주무관)	협치지원관 (2인)	행정	민간
		협치팀 (주무관)	협치지원관 (1인)

협치조정관과 협치지원관의 개념과 역할

❖ 협치조정관

- 민·관 협력의 촉진, 협치 제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 등 민관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지역 시민사회 현황과 행정체계 및 운영원리를 잘 알고, 민과 관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함
- 분야별 시민사회와 부서별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다양한 분야,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협치지원관

- 민관협치 제도구축과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에 있어 필요한 사무를 할 수 있는 협치 업무 담당자
- 숙의·공론장 기획과 운영, 지역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의제별 워킹그룹(민관파트너십) 구성 및 운영

**개념** | 워킹그룹은 지역사회혁신계획 내 사업의 실행과정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파트너십 조직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 활동 내용
  - 의제 우선순위 결정 후 해당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해야함
    - ▶ 의제와 연관된 행정부서(하나 이상의 부서)와 민간파트너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함
    - ▶ 의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워킹그룹은 최대한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해당 워킹그룹은 직접 사업의 실행주체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자치구 협치회의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구성함
    - ▶ 실행 주체는 최대한 다양한 민간의 조직·주민들과 다양한 행정 부서,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 등이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공론장 진행을 통해 등장한 지역주민과 주체들이 워킹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TIPS**

- 의제별 실행주체(워킹그룹)의 민간 파트너는 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미리 구성(안)을 고려하는 것이 원활한 실행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 실행그룹(워킹그룹) 또한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도봉구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사례

- 의제별 워킹그룹(도봉구에서는 워킹그룹을 '협치포럼'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구성하여 운영함

의제명	협치포럼 (워킹그룹)명	구성					
지역사회 협치역량 강화	협치역량강화 포럼 (21명)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협치 조정관	민		
도봉구 구민청 조성	협치구민청 포럼 (17명)	중간 지원조직	민	협치추진 사무국	협치주무 부서	주관 부서	구의원
방학천 한글문화 거리 조성	협치방학천문화 예술거리 포럼(21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구의원	중간 지원조직
도봉구 문화예술 창작센터 운영	협치평화문화진지 포럼(18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구의원	중간 지원조직
시민평생학습시설 운영	협치평생학습시설 포럼(16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중간 지원조직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협치꼬리명주나비 포럼(18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중간 지원조직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협치어르신행복 포럼(19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중간 지원조직	구의원
방학중학교 빈교 실 공유	협치꿈빛터 포럼 (18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중간 지원조직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협치도봉애잘먹자 포럼(18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범죄 사각지대 안심 네트워크 구축	협치안심벨 포럼 (20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도봉청년 네트워크 구축	협치청년다움 포럼(18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중간 지원조직	
50+세대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협치50더하기 포럼 (19명)	주관 부서	협치주무 부서	협치추진 사무국	민	중간 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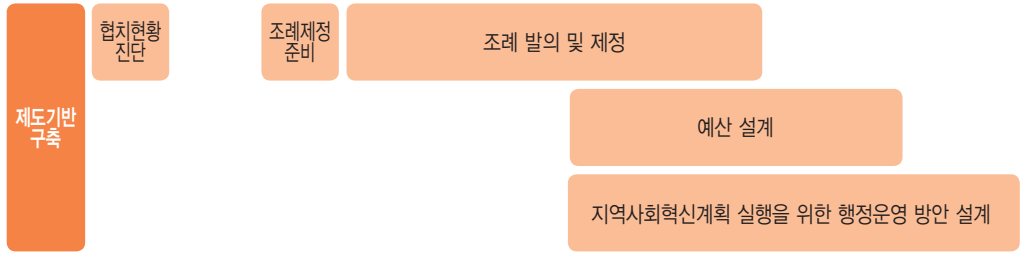
**참고**

**도봉구 협치 포럼 운영 프로세스 사례**

구분	프로세스	업무 내용	비고
협치 의제 선정		<p>1.1 협치의제로 발굴한 의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p> <p>1.2 의제별 실행계획서를 포함한 지역 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협치의제를 알린다.</p> <p>1.3 선정된 협치이제 세부 예산 실행 계획(시비 간주처리)을 수립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과</li> <li>· 의제 주관부서</li> <li>· 지속가능정책 담당관 (협치도봉사무국)</li> </ul>
협치 포럼 구성		<p>2.1 주관부서와 협치도봉사무국이 협력하여 포럼 위원 및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포럼 의장을 선출한다.</p> <p>2.2 실무회의 및 워킹그룹을 통해 의제별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후 사업계획서 내부방침을 받는다. (협치조정과 협조결재 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주관부서</li> <li>· 협치도봉사무국</li> </ul>
협치 포럼 운영		<p>3.1 연 3회 이상, 협치이제 계획 공유, 추진경과 공유 및 중간점검, 성과 공유의 정기포럼을 갖는다.</p> <p>3.2 포럼 의장은 포럼 운영 시 실행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제실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p> <p>3.3 실행계획 승인, 예산안 변경, 의제 실행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포럼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p> <p>3.4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워킹그룹 혹은 실무회의를 통해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뒤, 사업을 실행한다.</p> <p>3.5 다음 연도 협치이제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주관부서</li> <li>· 협치도봉사무국 (※ 예산변경시 지속가능정책 담당관 사전협의)</li> </ul>
사후 관리		<p>4.1 마지막 정기 포럼 시, 포럼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누고, 향후과제를 설정하고 점검한다.</p> <p>4.2 협치이제의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에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추후계획을 수립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주관부서</li> <li>· 협치도봉사무국</li> </ul>

## 3 제도 기반 구축 과정

제도기반 구축 : 자치구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조례, 예산, 조직) 기반 마련의 과정



### 협치 현황 진단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또는 민·관 합동 TFT)
- 활동내용
  - 협치 관련 조례 유무 파악, 주민 참여, 정보공개 운영 실태, 행정혁신, 민·관협력, 시민참여제도 등의 협치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
  - 협치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조례 제·개정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또는 민·관 합동 TFT)

### ● 활동내용

- 협치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 실효성 있는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민관 협력의 프로세스와 주민 권한을 강화하는 절차와 창구 등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결정의 힘을 강화하여야 함
- 기존에 협치 또는 거버넌스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 경우(예. 경제·사회·환경 등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조례’ 등), 이를 개선하거나 확대하여 지역사회 협치 기반의 구축을 위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음
- 제정된 협치조례가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평가를 통해 개정을 할 수 있음

## 예산 설계

###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 ● 활동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의제별 세부계획에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서울시의 지역사회혁신계획 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중앙정부, 서울시 보조금(지역사회혁신계획 외), 자치구 자체 재원을 연계하여 자치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협치적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 예시 :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한 의제를 선정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혁신지구의 예산과 함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산을 어떻게 연계하여 편성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은 교육혁신지구 관련 의제가 협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매칭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자치구 협치회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편성된 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개별 사업으로 분리 단절되어 추진되는 각종 협치 선도 사업들간 연계·조정·통합을 촉진하는 예산제를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 운영 방안 설계

###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 ● 활동내용

- 자치구 협치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 개편, 협치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 나아가 융합형 행정을 구현하는 업무 재설계 등 다양한 행정혁신 방안이 필요함
  - ▶ 예시 : 자치구 행정부서 칸막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중앙, 광역의 관련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치구 공공분야 관련 자원조사를 통한 잠재 자원의 발굴, 협치적 행정업무 추진에 적합한 평가제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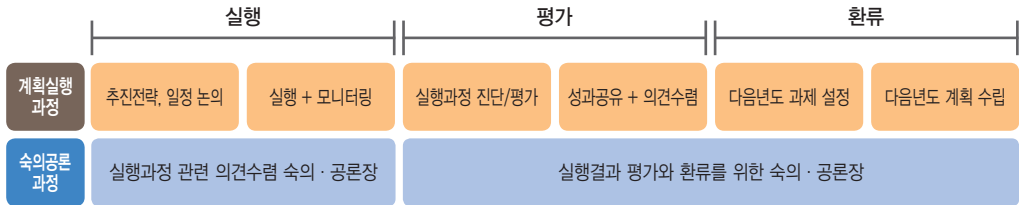


# IV

---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과정의  
이해

# 1 계획실행 과정



## 추진전략, 일정 논의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의제별 워킹그룹(민·관 파트너십)
- 활동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 추진전략과 일정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함
- 숙의·공론
  - 의제별 워킹그룹은 개방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안별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함
  - 정기적으로 워킹그룹 회의와 공론장을 열어 실행과정을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워킹그룹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실행과 모니터링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의제별 워킹그룹(민·관 파트너십)



● 활동내용

- 세부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의제별 워킹그룹과 자치구 협치회의는 실행의 전 과정이 협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함
- 자치구 협치회의와 자치구 협치 추진단(사무국)은 계획 실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숙의·공론

-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의제별 워킹그룹(민·관 파트너십)과의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실행과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함
- 실행과정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 실행과정에 대한 지역주민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실행과정 진단 및 평가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의제별 워킹그룹(민·관 파트너십)

● 활동내용

- 의제별 실행과정을 진단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행과정 진단 및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진단과 평가과정에 필요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와 함께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함
- 전체 의제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에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해야 함
  - ▶ 자치구 차원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수립한 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정, 예산 등), 워킹그룹의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함

● 숙의·공론

- 의제별 워킹그룹에서 실행과정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자치구 협치회

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당해 연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결과에 대해 평가함

## 성과공유와 의견수렴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의제별 워킹그룹(민·관 파트너십)
- 활동내용
  - 실행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공유하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함
- 숙의·공론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결과에 대한 성과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을 개최함

## 다음연도 과제 설정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의제별 워킹그룹(민·관 파트너십)
- 활동내용
  - 기존 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할 것인지 논의함
  - 기존 의제 이외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과 목표 실현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새로운 과제가 도출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숙의·공론
  - 다음연도 과제가 설정되면 그 결과를 관련부서, 주민 등과 공유하고 그에 맞는 과제 실행방안 및 의제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계획 수립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의제별 워킹그룹
- 활동내용
  - 평가단계에서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다음연도 계획 수립과정은 새로운 의제발굴 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늦어도 10~11월부터 시작해야 함
  - 매년 변화하는 상황과 예상하지 못한 지역의 이슈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함
- 숙의·공론
  -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숙의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실행
  - 특히 전년도 계획 수립의 공론·숙의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 의제사업 실행 사례 : 도봉구 방학중학교 빈교실 공유

#####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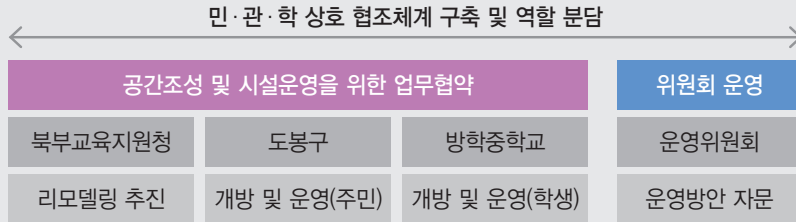
- 방학중학교 학생 수 감소로 늘어난 빈 교실의 노후화 진행과 그로 인한 관리비용 증대로 빈 교실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복합시설로 조성을 추진

##### 2. 추진목표

- 학교 시설을 학생위주의 공간이 아닌 학생과 지역 주민의 학습 및 문화, 예술 체험형 복합 공간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 모두에게 적극 개방하여 대관율 100% 달성
- 복합시설 내 다양한 교육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강연회, 포럼, 각종 소공연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과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 기회 확대

### 3. 협치 체계

- 민관학 실무협의회 구성(협치 네트워크 구축)
  - 방학중학교 복합시설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 학교 교원, 주민, 학부모, 학생, 관계 전문가, 공무원, 협치도봉구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



- 협치기반(파트너십) 진단 및 협치네트워크 구축

민간주체	도 봉 구	서 울 시	기타
학생, 학부모, 일반주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정책 담당관	관계 전문가 협치도봉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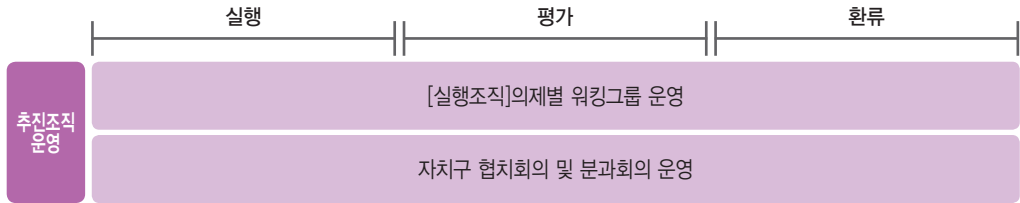
### 4.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홍보
  - 방학중학교 복합시설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도봉뉴스,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

- 모니터링

구 분	성 과	성 과 지 표	성과 목표	성과측정 (모니터링)방법
사업 평가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개최 건수
	대관을	공간 대관율(이용율)	90%	대관 건수
	민관학 협의회	협의회 개최 수	5	공문, 회의록 등
	사업홍보	페이스북 좋아요 수	200 이상	공문발송

## 2 추진조직 운영 과정



### 의제별 워킹그룹<sup>9</sup>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의제별 워킹그룹
- 활동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성한 의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사업을 실행
  - 정기적인 회의, 워크숍,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워킹그룹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구 협치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 추진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협치추진단(사무국), 분과위원회
- 활동내용
  - 워킹그룹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사항은 없는지, 계획대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실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워킹그룹과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9 p.63 [참고. 도봉구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사례] 참고



## 부록

---





### 〈관련 계획〉

부록1.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80
1-1.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97
1-2.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	108
1-3.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 운영계획	121

### 〈서식〉

부록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서 서식	
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신청서	127
2-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논의주체 명단	128

### 부록3.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시 첨부 서식

3-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서	129
3-2. 자치구 협치회의 명단	130

### 〈계획서 목차 예시〉

부록4. OO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목차 예시	131
부록5. OO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목차 예시	133
부록6. 의제별 실행계획 세부목차 예시	135

### 〈운영지침〉

부록7. 2020-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137
--------------------------------------	-----

### 〈협약서〉

부록8. 협약서	146
----------	-----

부록1.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 2020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자치구 민·관 협치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시민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과 정책실행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정책의 문제해결 능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0 지역협치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1. 추진근거 및 배경

####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2015.11.5)
  - 시장협치와 지역협치로 구분 추진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정무부시장방침 제1호, 2019.2.25)

#### ▣ 추진 배경

- 민·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치 활성화 요구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민·관의 수평적·협력적 환경 조성 필요
- 지역 협치 형성을 위해 민간영역 파트너의 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지역 시민이 협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시민협력플랫폼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지역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추진
  - 민·민, 민·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협치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실행 추진 : 하향식(Top Down) ⇨ 상향식(Bottom Up)

### 2. 주요성과 및 과제

#### ▣ 주요성과

-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추진체계 구축
  - 자치구 협치체계 제도적 기반인 '협치조례' 22개구 제정
  - 자치구 협치기구인 '협치회의' 22개구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협치 실행 전담 조직인 '협치추진단' 22개구 설치 및 운영

- 자치구 협치 총괄 전담자인 ‘협치조정관’ 제도 14개구 도입
- 지역사회 공론과 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계획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전 자치구 확대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전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여 시민주도의 지역 사회 문제해결력 향상(‘19년 20개 자치구, 193억원, 222건 협치의제 실행)
- 민·민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각 지역에 협치 시민 주체의 형성
  - 시민협력플랫폼(10개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8개 구) 지원
- 다양한 협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협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협치 실행력 향상 도모
  - 지역협치 민간 리더, 담당 공무원, 자치구 협치지원관 등 지역협치 주요 코어 그룹에 대한 주체별 문제해결력 강화 교육 추진
  - ※ 추진 실적 : 4개 과정 6개 프로그램 29회 727명

## ■ 개선과제

-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보완 및 주민 체감도 향상 필요
  -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컨설팅, 교육, 협의조정(심의), 실행지원, 평가, 전략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맞춤형 사업 지원체계 마련과 규모 있고, 파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도모
- 시민주도의 협치를 위한 민간의 협치역량 향상과 다양한 시민 주체 형성 필요
  - 지역협치 도입 시기에 협치 시민 주체의 형성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시민주도의 협치는 여전한 과제
  - ※ 지역협치에서 시민 사회의 요구사항은 협치회의의 민주성, 협치 실행 의지와 시민의 권한, 의제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지원정책 일몰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지원체계 마련 등 안정성 제고
  - 시민협력플랫폼 종료(‘20년)에 따른 민민협력 사업의 확대 및 안정화 정책 마련
  - ※ 권역별NPO센터, 지역사회혁신계획, 공익활동지원사업, 사회협약,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협치 주체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단계별 교육 과정 운영 필요
  -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전반적 협치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 설계로 ‘관심 주민 → 참여자 → 활동가 → 협치리더’로서의 성장과 활동 영역 확장 유도
-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획력 향상 및 협업과 교류 활성화 필요
  - 현장의 자체 기획력 향상을 위한 간접 지원 지속 확대(컨설팅, 간담회, 사례공유회 등) 및 협치교육 전문가 pool 확대 운영 및 분야·영역별 네트워크 구축

### 3. 추진방향

#### ▣ **민민, 민관의 지역 협치기반 안정화 및 사업의 실행력 제고**

- 자치구별 협치 관련 제도정비 등을 통해 지역협치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평가·모니터링 기준 개발을 통한 지역협치 사업 내용의 구체성 제고
- 협치 인식개선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론·숙의 과정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실있는 숙의공론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운용
-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협의조정 등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도입·추진**

- 지역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 생활형 단위사업 중심 의제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으로 확대

#### ▣ **협치학교 기반 조성 및 교육 생태계 확장**

- 다양한 협치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협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치 당사자의 실행력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교과개발 및 콘텐츠 제작

#### ▣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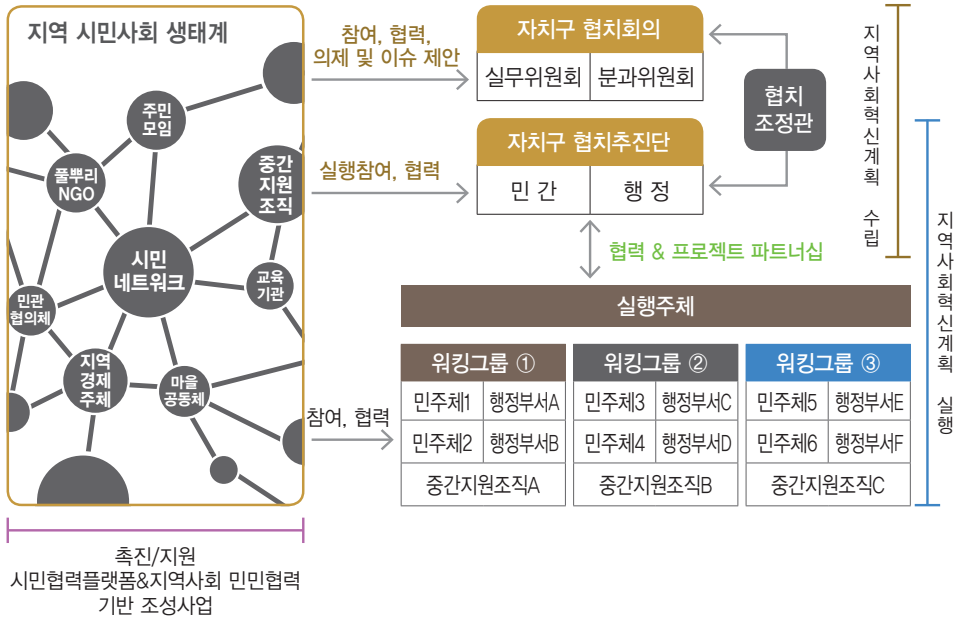
- 민·민협력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활성화로 지역내 공익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체계 구축

#### ▣ **市와 자치구별 역할분담과 유기적 결합으로 지역 협치 환경 조성**

- 시(市) 역할 : 자치구별 지역 협치 추진 관련 행·재정적 지원,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 및 주체별 역할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자치구 수요에 맞는 신규 정책 수립 지원
- 구(區) 역할 : 지역 협치 체계 구축 및 운영,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4. 지역협치 추진단계

### ▣ 지역협치 체계도



### ▣ 자치구 추진체계

#### 1. 자치구 협치회의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승인하며, 지역사회 협치 사무에 관한 최고의 협의·조정·자문 기구
- 협치회의는 다양한 영역(분야)을 대표하는 적정 인원으로 구성
  - 핵심집단 워크숍,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규모의 공론장 운영을 통해 조직 구조, 참여 주체 범위 등은 해당 지역에서 자율적 결정
  - 자치구 협치조례에 인적 구성, 기능(역할),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 규정

#### 2. 자치구 협치추진단

- 협치회의의 실무기능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력형 실행조직 운영

- 추진단, 사무국 등의 명칭을 가진 실무 지원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협치기반 조성 등을 지원

### 3. 협치조정관

- 행정 내부에서 협치 조성을 총괄하는 ‘협치조정관’ 제도 운영(채용)
  - 행정과정과 협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선 조정자
  - 구청, 지역내 다양한 민간주체, 자치구 지원조직 등과의 관계에서 전달·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부여 받은 책임자

### 4. 협치지원관

- 행정 내부에서 협치 추진을 지원하는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
  - 민관협치 제도 구축과 사업 추진시 계획 수립, 실행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는 협치 업무 담당자
  - 숙의·공론장 기획과 운영, 지역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

### 5. 워킹그룹

- 협치의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으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 주요 관계자(의제관련 전문가, 제안자, 담당부서, 지역주민 등)가 직접 참여하여 협치적으로 사업 실행

## 5. 2020년 세부실행계획

###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 ■ 추진배경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운영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분야 간 융합 촉진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 시민의 예산 결정권 강화
  - 사회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확대

#### ■ 추진현황

- 연차별 지원 현황

구 분		자치구
18년 지원(7개)	2년차(7개)	성동·동대문·도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19년 지원(11개)	3년차(8개)	성동·동대문·도봉·은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2년차(3개)	종로·강서·동작
20년 지원(19개)	4년차(8개)	성동·동대문·도봉·은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
	3년차(6개)	종로·성북·노원·강서·동작·강동
	2년차(5개)	광진·중랑·강북·마포·구로

#### ■ 추진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 단위 유형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으로 일괄 통합하여 추진
    - ※ '20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19개구(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에 예산 지원(9.5억원~10.5억원)
    - 단, 양천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일반사업) 3년차 지원(3억원), '21년도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 예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개선으로 사업운영의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가치·목적 실현, 내실 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도입·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



### ■ 사업규모

- 연차별 지원 : 10억원 이내(대상 區별)
- 약 250억원 규모(2020년 예산편성, 2021년 예산집행 기준)

## ②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

### ■ 추진배경

- 시민과 행정이 협치를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협치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도모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통해 다양한 의제들로 민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하였지만 생활단위·소규모 의제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한계가 있음
  - 민관협치의 경험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필요

### ■ 추진방향

- 지역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지역사회혁신 모델 마련 및 확산
  - 지역의 시민,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다양하고 어려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및 확산
- 민관협치로 지속가능한 추진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 행정의 자원만이 아니라, 공익자원, 민간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
    - ※ 자치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성격의 사업(도시인프라 구축 등)은 제외
-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혁신적·실질적 대안 도출
  - 로컬랩, 리빙랩 등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도입하고, 시민·시민사회·행정 등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서울시정 주요 계획 등과 연계·협력하여 시·구·지역주민의 공동협력체계 마련
  -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과 연계·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구·지역사회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 사업규모

- 지원예산 : 약 15억원 규모(3개구 내외 지원) ※전략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경쟁 공모

## ■ 기본원칙

- 통합적이고 증거기반 접근과 대안도출
  - 지역사회 주요 문제(의제)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통한 대안을 도출
  - 전략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
-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연계와 협력
  -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숙의·공론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파트너십
  -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주민, 자치구 등)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효과 증진 모색
- 혁신적 운영모델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등을 고려한 협력적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성 확보

## ■ 주요내용

- 의제 발굴 및 선정
  - 전략사업 발굴과 전략 의제선정 등을 위한 숙의공론장의 설계 운영
- 조사 및 분석
  - 지역 커뮤니티의 수요, 핵심의제 관련 행·재정적 분석 등 정성·정량적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조사·분석
    - ※ 전략사업의 핵심 의제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현황, 사회적 서비스 현황, 인적·공간적 현황, 수요예측 관련 등의 조사·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
- 대안 도출
  - 혁신적 운영 관점에서 유지관리계획, 협력적 운영계획, 성과지표설정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도출

## ③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

### ■ 추진 배경

- 민선5기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를 필두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예산, 민주주의 서울(숙의·공론장) 등 다양한 협치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시민 주체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
- 지역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민·관 협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 추진 방향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더 많은 시민 주체가 참여하여 시민 간 공동의 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지역 현장 수요에 따른 시민 성장 목표의 실현과 연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 간의 능동적인 교류·협력 기회의 제공
-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연대 체계 구축,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역 사회 민·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 모델의 제시 및 확산
- 서울지역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성장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지역의 민·관 협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자치구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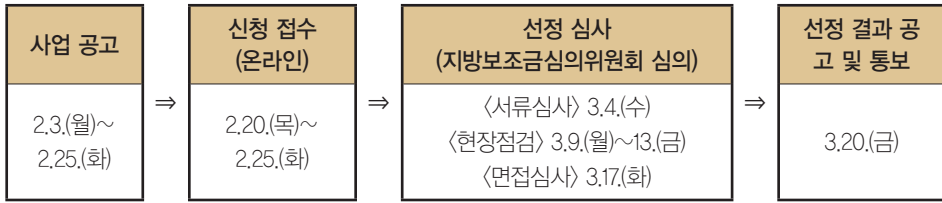
### ■ 추진 계획

- 사업목표
  - 지역 사회의 시민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정책 연구 및 공론화,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의 조성
- 사업기간 : 2020. 2. ~ 2021. 2.
- 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대상 :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 선정)
  - ※ '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구(양천·구로·강서·도봉구)는 제외
- 사업예산 : 537백만원(민간경상보조 500백만원, 사무관리비 37백만원)

### ■ 지원 방식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정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 사업부서는 선정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 확인
  - ※ 전년도 사업성과 반영(시민협력플랫폼 사업,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 '19년도 사업 시 중도포기 또는 계획대비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규모 : 10개 내외(컨소시엄 자치구별 1개씩 선정)

○ 지원절차



- 지원기간 : 2020. 4.(협약일) ~ 2020. 12.(9개월간)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최대 5천만원이내(심사 시 조정가능)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사업 내용
<p><b>①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민사회 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집담회, 조사 사업</li> <li>- 지역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li> <li>- 민관 협치 의제 간 융합, 시민자산화, 동 주민자치 등 정책 개발 및 공론화</li> <li>- 지역 사회의 새로운 주민, 활동가 그룹(분야)의 발굴 및 육성</li> <li>-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송년회, 한마당, 공동워크숍 등 각종 연대 행사</li> </ul>
<p><b>② 시민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활동 기반의 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추진 기구의 설립</li> <li>- 지역 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기획 및 수익 모델의 개발·실행</li> <li>- 지역 시민 공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조직 설립·운영</li> <li>-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통합 교육기관 설립</li> <li>- 주민 및 공익활동가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구축</li> <li>- 지역 의제 개발 및 정책화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시민정책 연구소 설립·운영</li> </ul>
<p><b>③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b></p>

**④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지역협치의 주체 중 민간은 행정에 비하여 인력, 예산 등 역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자치구에서 실시되는 민간 위탁 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현실임
- 이에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구별로 지역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향상시켜 자치구 민민,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

### ▣ 주요 현황

#### ○ 연차별 지원 현황

구 분		자치구
'16~'17년(9개 구)	1년차(9개 구)	성동구·광진·동대문·강북·은평·서대문·마포·관악·강동
'17~'18년(11개 구)	2년차(6개 구)	강북·광진·은평·서대문·마포·관악 ※ 강동·동대문·성동 종료
	1년차(5개 구)	성북·도봉·양천·강서·구로
'18~'19년(10개)	3년차(5개 구)	광진·강북·은평·마포·관악 ※ 서대문 종료
	2년차(5개 구)	성북·도봉·양천·강서·구로
'19~'20년(4개 구)	3년차(4개 구)	도봉·양천·강서·구로 ※ 성북 종료

#### ○ 2019~2020년 지원단체 세부현황

자치구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보조금
양천구	'19.11.01. ~ '20.10.31.	(사) 양천마을 외 2개 단체	100백만원
도봉구	'19.11.01. ~ '20.10.31.	(사) 도봉시민회 외 3개 단체	100백만원
구로구	'19.11.01. ~ '20.10.31.	(사)구로시민센터 외 10개 단체	100백만원
강서구	'19.12.04. ~ '20.12.03.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외 5개 단체	100백만원

### ▣ 추진 방향

- 시민 주도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성장 과정을 강조한 맞춤형·단계별 지원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운영 및 민관 합의를 방식의 사업 성과평가
- 지원 종료된 5개구 컨소시엄의 성장과정을 분석, 사례서로 제작하여 성과 홍보 확산

### ▣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0. 1. ~2021. 2.
- 시민협력플랫폼 개념 및 역할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과정 중시)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인력(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역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개요
  - 지원자격 : 현재 자치구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단체,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의 컨소시엄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억원(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책임자 활동비, 사업비 등
  - 선정방식 : 매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19년 사업 선정(4개구:강서·구로·도봉·양천), '20년 12월 지원 종료 예정
  - 추진방법 : 서울시 심의·선정·성과평가, 자치구 정산 관리
- 사업예산 : 49백만원(사무관리비 4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년 말 교부 완료)

## 5 서울협치학교 [지역분야]

### ■ 추진배경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 협치 경험 부족으로 민관의 상호 인식차가 존재하고, 각 주체별 협치 실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자치구 단위 협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당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 2019년 추진실적

- 지역협치교육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확장
  -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단단한 협치기반 조성
    - ▶교과개발 : TFOT 운영 (2개 과정 × 6회), 협업촉진자 과정 커리큘럼 개발 (총 5강, 17시간), 교육기획 과정 커리큘럼 개발(총 4강, 12시간)
    - ▶교안제작 : 기초이해교육 및 협치영화상영회 교안 PPT(총 2종)
    - ▶콘텐츠 개발 : 실습 교보재(협치, 수다떨킷 1종), 숙의공론 사례영상(2종), 사례서 1종
  -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협치 기반 마련
    - ▶수요조사 : 총 23개 조사서, 110건
    - ▶아카이브 : 자치구 협치교육 아카이빙(15개 자치구, 89개 프로그램, 179회, 6,761명)
    - ▶네트워크 : 지역협치교육 간담회(1회), 지역협치교육 현황파악 FGI(4회, 9개 자치구)
    - ▶기타 자치구 협치교육 기획 자문 및 강사 추천 등(상시)

- 당사자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협치 실행지원교육 등 4개 과정 6개 프로그램 : 총 29회 727명

구분	지역협치실행지원 교육	지역협치역량강화		매일성장과정		
		협업촉진자 과정	교육기획 과정	기초이해	기초역량	워크숍
목표	지역사회혁신 계획 구체적 실행 방법 습득	지역협치 당사자 전문성 강화 및 실행력 제고		지역협치 실무자 기초역량 향상		지역협치 주체간 활동교류
대상	2019 신규 시행 자치구 민관TFT 및 협치회의	지역협치 민간의장 및 분과장 등 (리더급)	지역협치 교육 담당 공무원 및 협치지원관	지역협치 신규 담당자 및 신규 위원	지역협치 참여주체	자치구 협치지원관
대상 인원	200명 (20명x5개 자치구 x2회)	150명 (30명x5회)	120명 (30명x4회)	30명	60명	40명
참석 인원	369명 (8개 자치구, 17회)	120명 (총 5회)	70명 (총 4회)	60명	60명	48명
시간	회당 2~3시간	회당 3~4시간	회당 3시간	3시간	3시간	8시간
시행	5월~11월(상시)	10.8~11.5	10.31~11.21	8월	10월	11월

## ▣ 2020년 추진방향

- 협치 실행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협치 주체의 체계적 성장 지원
  - 협치 철학과 가치 확산을 위한 기초 이해교육과 협치 사업 실행자 훈련과 성장을 위한 참여형 전문교육으로 구분
  - 다양한 협치교육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지속가능한 지역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역협치교육 생태계 확장
  - 상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광역의 교육 지원으로 성과 확산과 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
  - 현장 활용 가능한 교육 도구 및 관련 콘텐츠 제작으로 협치 과정 기록 및 성과 확산 도모

## ▣ 2020년 추진계획

- 지역협치교육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확장
  - 지역협치교육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치학교 전문가 네트워크, 유관기관 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지역협치교육 담당자 간담회, 협치교육 사례 공유회, 기타 협력 사업 등

- 현장 활용 가능한 공통교안 및 교육 도구 개발
  - ▶ 수요조사 결과 반영한 교과 개발 및 놀이 형태의 실습용 교육훈련 보조재료 제작
-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협치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지역협치교육 매뉴얼 제작, 협치 사례서 및 영상, 협치 리포트 발간 등
- 지역협치 주체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협치교육
  - 1개 과정 3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전문 역량 강화 과정		
	협업촉진자 양성 교육	협치지원관 성장 교육	협치 강사 양성 교육
목 표	지역협치 민간 주체 전문성 강화	자치구 협치지원을 위한 촉진 방법 습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협치 전문가 양성
대 상	자치구 민간의장 및 분과장 (또는 위원)	자치구 협치지원관	지역사회 리더 및 관련 분야 활동가
대상 인원	30명	50명	10명
시 간	3시간 x 5강	8시간 x 3회	5시간 x 6회
시 기	4~5월	3~5월	9~11월
교육 방식	이론 강의 참여형 워크숍	사례발표 토론형 자기주도 학습	이론 강의 참여형 워크숍 멘토링 등
주요 내용	협업촉진자 개념 이해, 갈등관리 및 회의운영 기법 등	자치구 행정 및 시민사회 이해, 공론장 설계, 주민 조직화 기법 등	협치 개념 및 정책사업 전반 이해, 사례 학습 및 교안 구성, 실습 등

※ 세부 교육 내용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가능  
 ※ 뉴딜일자리지원사업 활동가 대상 직무교육 별도 추진

### ㉔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사업」

#### ▣ 추진 배경

-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공공분야의 다양한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와 사회진입 역량을 제고
- 지역협치 활성화로 지역시민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 증가와 시민사회 단체 간 공동의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 요구
- 지역사회공익활동가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시니어 및 지역주민 등에게 지역 현장의 일 경험을 지원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범위 확장
  -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역량을 제고



### ▣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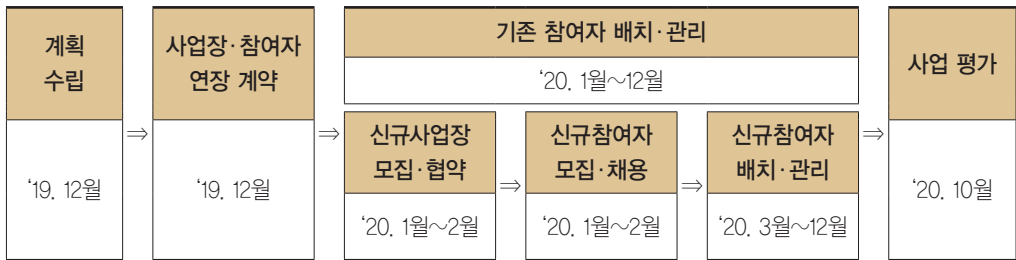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및 인원 배정 : 총 18명
  - 협력사업장 모집 및 협약 : 16개 단체 신청 및 협약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18명 채용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및 인원 배정 : 총 18명
  - 협력사업장 협약 모집 및 협약 : 14개 단체(연장) ※ 2개 단체 협약 종료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11명 근로계약 연장 체결, 7명 신규모집

### ▣ 추진 방향

- 지역사회 공동 의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정책인 시민협력플랫폼, 민민협력기반조성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가를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의 활동을 통해 지역단체 간 상호 신뢰형성과 연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역량 성장과 지역협치 정책 활성화에 기여

### ▣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사업기간: 2020. 1.~ 2020. 12.
- 활동인원 : 총 18명 (연장 11명, 신규 7명)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 지원자격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현재 실업상태인 자로 해당 자치구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민간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활동 경력자 우대, 해당 자치구 거주자 우대
  - 근무조건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임금수준 : 시급 10,530원
    - ※ 생활형 임금으로 식비 포함

- 직무내용 :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 공통 의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 진로방향 : 지역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 취·창업 연계 가능
- 협력사업장 모집 및 협약
  - 모집규모 : 총 14개 단체
  - 자격요건 : 자치구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에서 합의된 단체
    - ※상근자 3인 이상
  - 역할 : 참여자 근태관리 및 현장교육, 분기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 등
- 참여자 및 협력사업장 교육 등
  - 협력사업장 간담회 : 연 2회 (6, 12월)
  - 참여자 직무교육 및 간담회 : 연 50시간 이상
- 추진방식 : 사업부서 직접수행
- 사업예산 : 575백만원(인건비 523백만원, 사무관리비 53백만원)

부록1-1.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21년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 속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 1. 근거 및 배경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 추진 배경

- 공론·숙의가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민·관이 공론과 숙의를 통해 운영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는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결정권과 자치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 결정권 강화
  - 사회문제의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확대 필요

### 2.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개요

#### ▣ 개념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3년 전략계획 + 1년차 실행계획(2021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

### 3.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계획

#### ▣ 추진 목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제도 등)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
- 자치구별로 축적한 민관 협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주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력을 도모

#### ▣ 추진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 단위 유형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으로 일괄 통합하여 추진
    - ※ '20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19개구(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에 예산 지원
- 시민숙의예산제도로의 전환에 맞추어 공론·숙의 과정 내실화, 고도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가치·목적 실현, 내실 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
  - 건강한 공론·숙의 과정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성과 문제해결력이 담보된 구정 의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도입
  - 시민과 행정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관 협치의 효과성을 실증 필요
  - 현재의 생활형 단위사업 중심의 의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을 도입

**▣ 사업 규모**

-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 약 255억 규모(2021년 예산 편성 기준)
  - 24개 자치구 × 10억 = 240억
    - ※ 자치구별 참여예산제도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9.5-10.5억)
  - 전략사업(3~5개 이내 자치구) = 15억
    - ※ 전략사업은 '20년 2월 중 선정기준, 주요내용 등을 별도 공지 예정

**▣ 추진 절차**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 절차 및 내용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1월~2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설명회 개최
② 사업접수(3.10~4.20) - 자치구 협치회의(협치추진 민관TFT 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자치구 컨설팅(3월~7월) - 지역주민들의 숙의·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구별 컨설팅 지원
④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7.10) -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로 제출
⑤ 협의·조정(7.10~8.14) - 수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자치구 협치회의 간 협의·조정
⑥ 최종 선정(8.21) - 협의·조정조건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 확인 및 최종사업 선정
⑦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승인(8.29)

## 4. 세부 추진계획

###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1월 ~2월	① 지역사회혁신 계획 (구단위 계획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li> </ul> </li> <li>•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협치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사업추진 논의 및 융합 구조 설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 서울협치담당관</li> <li>•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 TFT</li> </ul>
3.10 ~4.20	② 사업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협치회의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논의가 완료된 서울시 전체 자치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처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li> <li>•신청자 : 자치구 협치회의 또는 민·관 TFT</li> </ul>
3.10 ~6.30	③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계획서 작성 후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li> <li>-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교육, 토론 등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시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 컨설팅단</li> <li>•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위원</li> </ul>
7.10	④ 사업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계획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li> <li>•제출자 : 자치구 협치회의</li> </ul>
7.10~ 8.14	⑤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상호토론방식의 협의·조정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li> <li>•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위원</li> </ul>
8.21	⑥ 최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최종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예산편성 확인 및 공통사항 조정</li> <li>- 협의조정 후 보완의견이 포함된 최종안 확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li> </ul>
8.29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li> </ul>
12월 중	⑧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의회 승인 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약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 서울시장</li> <li>•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li> </ul>

##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와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20년 7월 10일까지)
  -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컨설팅 지원단(가칭)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의 구체화와 실행계획 보완 조치
  - 7월 10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승인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제출

##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1월~2월)

-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설명회 개최
-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가 그 역할을 대신 함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 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1~2월 예정)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②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각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2. 사업접수(3.10~4.20)

- ▶ 사업 추진 결정 후,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 관련주체

- 접수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신청자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 신청 시 각 자치구의 區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의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 3. 컨설팅 (3.10~6.30)

- ▶ 각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은 7월 10일까지로 함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초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우선 검토하고, 각 자치구와 협의·조정된 의견이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최종 승인 단계까지는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성립을 권장함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설치 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예산 교부

## ○ 추진내용

- 각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수립하되, ‘○○구 지역사회혁신 계획(구단위계획형)’의 제출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20년 7월 10일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같음
- 서울시는 (가칭)자치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교육, 컨설팅 과정 운영

## ○ 추진 방법

- 컨설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조정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초안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검토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 주요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구성원 중 여성 비율 40%이상, 민간 비율 70%이상 충족 여부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자치구 협치회의(가칭)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과 ② 2021년 실행계획(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의제 선정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2021년 실행계획은 2021년도에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실행계획 수립시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서울시 지원금의 70% 이내로 설계해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상의 부적격 대상 사업은 제외하여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을 위한 검토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4.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제출(7.10)

-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조정안을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최종 승인 후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제출

##### ○ 관련주체

- 접수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제출자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승인시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시민숙의예산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 5. 협의·조정(7.10~8.14)

-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의 협의·조정 진행
-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 관련주체

- 서울시 :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 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추진내용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20년 8월 2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자치구 협치회의(가칭), 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대해 협의·조정 검토 회의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보완 조치 확인

## 6. 최종 선정(8.21)

- 관련주체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추진내용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자치구 협치회의(가칭)에서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의 최종 계획서 확인 후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및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협의·조정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 확정

## 7.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승인(8.29)

- 관련주체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 협치회의(가칭)간 협의·조정을 완료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서울시 : 서울시장
  - 자치구 : 자치구 협치회의(가칭)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금액 확정 및 협약 체결

### ■ 서울시 수행사항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 설명회·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컨설팅 및 집합교육
  - 대 상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① 컨설팅단 구성,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내용(지역조사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에 대한 컨설팅, ③ 자치구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
  - 대 상 : 전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실행 자치구(11개)
  - 주요내용 : (가칭)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
  - 대 상 : 당해연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실행 자치구(19개)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자치구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 과정관리를 위한 조사와 기록을 수행
- 성과공유회 개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 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 간 공유

부록1-2.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

2020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

##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민관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진단·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치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I. 추진 근거 및 배경

####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 추진 배경

- 시민과 행정 간의 협치 기반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 필요
  - '16년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 자치구의 협치 기반을 구축하였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협치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민관 간에 풍부한 협치 경험 축적
  - 이러한 협치 경험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으로 성숙될 수 있게 하는 본격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
- 협치전략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제고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의 시민제안과 공론·숙의를 거친 의제 설정 및 실행 과정만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법 제시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협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유기적인 협치 방식을 제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도모 필요

#### ————(기존)지역사회혁신계획————

- 조례, 협치기구, 전담부서 등 협치기반 조성
- [시민]공론·숙의 의제 선정-[민관]공동 실행
-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현재 24개 구)



#### ————협치전략사업————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
- 협치 의제 선정과 실행의 전문화, 고도화
- ※ 협치전략사업 자치구(3개 구 예정) 시범실행

## II. 추진 현황

### ▣ 사업 현황

- 사업 신청 대상 자치구(총 11개 區)
  - '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
  - 사업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자치구명	연차	협치조례 (제정일)	협치회의 (명)	협치조정관 (명)	담당부서	세부사업 (건)
종로구	2	2018.10.05	23	1인(겸직)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	18
성동구	3	2017.07.13	50	1인	기획예산과 민관협력추진단	12
동대문구	3	2017.04.27	30	1인(겸직)	자치행정과 마을협치팀	12
도봉구	3	2016.12.29	25	1인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속가능협치팀	10
은평구	3	2017.03.16	30	1인	협치담당관 협치공동체팀	11
서대문구	3	2017.05.31	00	1인	기획예산과 협치지원팀	11
강서구	2	2017.06.07	30	-	협치분권과 협치지원팀	9
금천구	3	2017.03.13	30	1인(겸직)	마을자치과 금천번기팀	15
영등포구	3	2017.06.01	25	-	자치행정과 지역협치팀	11
동작구	2	2018.03.02	28	1인	기획조정과 협치팀	10
관악구	3	2018.10.25	40	1인	민관협치과 지역협치팀	16
<b>계</b>						<b>213</b>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조건은 자치구별로 '협치 조례 제정', '자치구 협치회의 설치'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20년 현재 총 24개 區)

구분	자치구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실행 (1개 區)	양천('20.10.31.종료)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실행 (4개 區)	중구·용산·강남·송파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19개 區)	종로·성동·동대문·도봉·은평·서대문·강서·금천·영등포· 동작·관악('19년 실행) 광진·중랑·성북·강북·노원·마포·구로·강동(신규)



### Ⅲ. 사업 개요

#### ▣ 추진 목적

- 지역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협치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협치 전략 모델의 제시 및 확산

#### ▣ 추진 목표

- 자치구에 축적된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 고도화
  - 민간과 행정 내외의 다양한 전문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여 협치의 유기적 발전 도모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 창출
  - 실증적·구체적인 변화목표(Outcome)를 설정하여 협치 실행의 효능 가시화

#### ▣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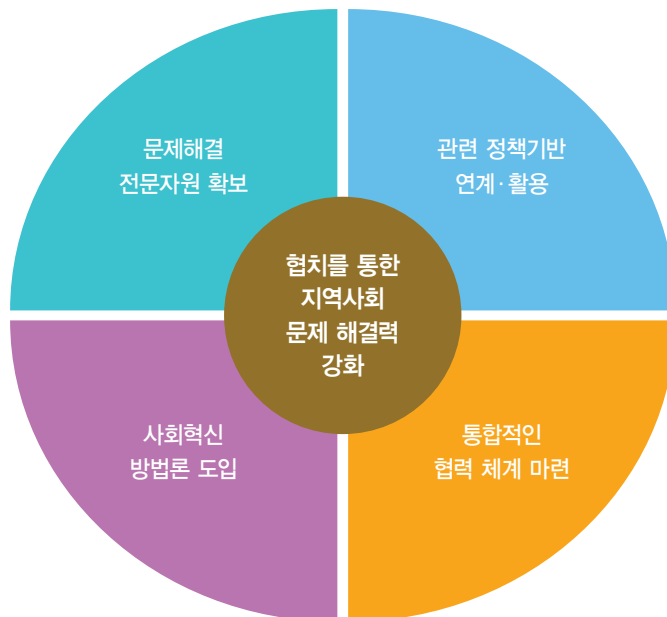
- 추진기간 : 2020. 2. ~ 2021. 12.
  - 1기 (사업안내, 자치구 선정 및 예산 편성) : 2020. 2. ~ 2020. 12.
  - 2기 (보조금 교부, 자치구별 사업 실행) : 2021. 1. ~ 2021. 12.
- 지원대상 :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
  - 종로, 성동,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총 11개 구)
- 지원예산 : 총 15억 원('21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
- 선정규모 : 위 대상 중 3개 구 협치전략사업 지원 선정(각 최대 5억 원 지원)
- 선정기준 : 지역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진단·해결력을 갖춘 자치구 협치전략사업
  - ※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은 아래 참조
- 운영절차

2020년							2021년		
사업 안내	사업신청서 제출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사업 선정	사업 승인	실행 준비	보조금 교부	사업 실행	정산
'20.2.20.	'20.4.30.	약 3개월	'20.7.31.	'20.8.11.	'20.8.29.	약 4개월	'21.1.	'21.1.1. ~ 12.31.	'22.1.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사업선정 위원회	서울시 시민 참여예산 위원회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4대 추진 전략

-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행정의 다양한 전문 자원의 확보
  - 자치구 내 행정의 정보·실행력, 시민사회의 활동성, 대학·연구 기관의 학술 업적, 주민의 현장·대표성 등 다양한 전문 자원을 확보 및 연계하여 추진
- 자치구의 현행 정책 기반을 연계·활용하여 민관 협치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
  - 전략 의제와 유관한 기존의 區 행정 정책 및 민간의 활동 경험을 파악하여 협치 전략사업과 연계하고, 향후에는 일반 시민이 활용 가능한 생활 인프라로 구축
    - ※ 자치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격의 일반 사업은 제외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혁신적 방법론을 연계하여 시민을 문제해결 당사자로 육성
  - 로컬랩, 리빙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계·활용하고 전문성과 활동성 등을 보유한 시민 주체의 발굴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
    -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로컬랩),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접목(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안을 실험 중임
- 서울시정 주요 계획과 연계·협력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통합적 접근
  - 서울시의 주요 정책(관련 사업부서)과 연계·협력을 맺거나 시·구·지역사회 간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의 효율화 및 검증된 해결법의 확대와 확산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개념도〉



## IV. 세부 사업 내용

### ▣ 사업 안내

####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 본청 10층 공용회의실2
- 대상 :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 협치 관계자
  - 종로, 성동,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총 11개 구)
  - 자치구 협치회의 및 협치 담당부서, 민관공동사무국 관계자 등
- 내용
  -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취지 및 방식 안내
  - 지원 신청 및 관련 서류 작성 요령 안내
  - 기타 질의 및 응답 등

#### 〈상시 상담 및 안내〉

- 일시 : 2020. 2. 20.(목) ~ 3. 19.(목)
- 방식 : 사업 신청 관련 문의에 대한 유선 안내
  -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 02)2133-7786

### ▣ 사업 신청

####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신청서에 민관 대표자 각각 날인)
- 제출 기한 : 2020. 4. 30.(목) 18:00까지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협치전략사업 수립계획서 ※ 붙임의 신청 서류 양식 참조
- 제출 방법 : 각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서울협치담당관)

#### 〈협치전략사업 수립계획서 작성〉

- 의미 : 자치구별 협치전략사업 수립을 위한 계획 과정의 제시
- 작성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

○ 주요 내용

<p><b>① 전략의제 선정 계획 (숙의공론 운영)</b></p>	<p>○ <b>숙의공론장 설계·운영을 통한 전략의제 선정</b>                      - 협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전략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숙의 공론장의 설계·운영 계획                      (기존에 도출된 각종 의제들의 복합, 융합 가능)</p>
<p><b>② 문제 진단 계획 (조사 및 분석)</b></p>	<p>○ <b>전략 의제에 관한 조사·분석으로 문제 정의(진단)</b>                      - 전략 의제에 대한 행정·학술적 분석 및 추가 조사 실시                      (지역적·인적·공간적 현황, 사회적 서비스 및 수요 등)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의제에 대한 문제 정의(진단)</p>
<p><b>③ 변화목표 수립 계획 (성과 지표 개발)</b></p>	<p>○ <b>협치전략사업 실행에 따른 정성·정량적 성과 지표 수립</b>                      - 전략 의제에 대해 1년 간의 문제해결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적 변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의 설정                      - 시민이 체감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규모화 된 지표의 개발                      (기존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 및 신규 개발 가능)</p>

- 반드시 주요 내용 3개를 모두 실행해야 하며 순서는 유기적으로 기획 가능

**〈수립계획서 기획 예시〉**

- ② 1차 문제 진단(시민 체감 수요 조사)
- ① 1차 전략의제 후보 선정(공론장 운영)
- ② 2차 문제 진단(전략의제 심층 조사 및 분석)
- ① 2차 문제 진단(문제 정의, 전문가 숙의 회의)
- ③ 변화(성과)목표 수립(성과지표의 신규 개발 또는 기존 지표 융합)

○ 협치전략사업 수립계획서 내용

- 수립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
  - ※ 관련부서, 전문가, 협치조정관, 민간 파트너 등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수립 기간 : 약 3개월 간
  - ※ 지원 신청('20. 4. 30.)부터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시('20. 7. 31.)까지 완료
- 소요 예산 :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
  - ※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없음

## ▣ 협치전략사업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과정〉

- 의미 : 자치구별 협치전략사업의 계획 수립의 과정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협치전략사업 수립 계획서를 실행하고 결과를 정리
  - '21년에 실행할 자치구별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작성
- 시기 : 2020. 5. 1.(금) ~ 7. 30.(목), 약 3개월 간
  - 자치구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 교육, 컨설팅, 간담회 등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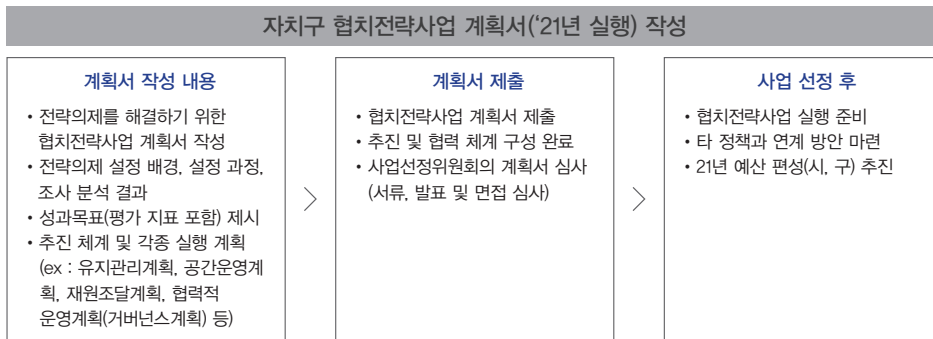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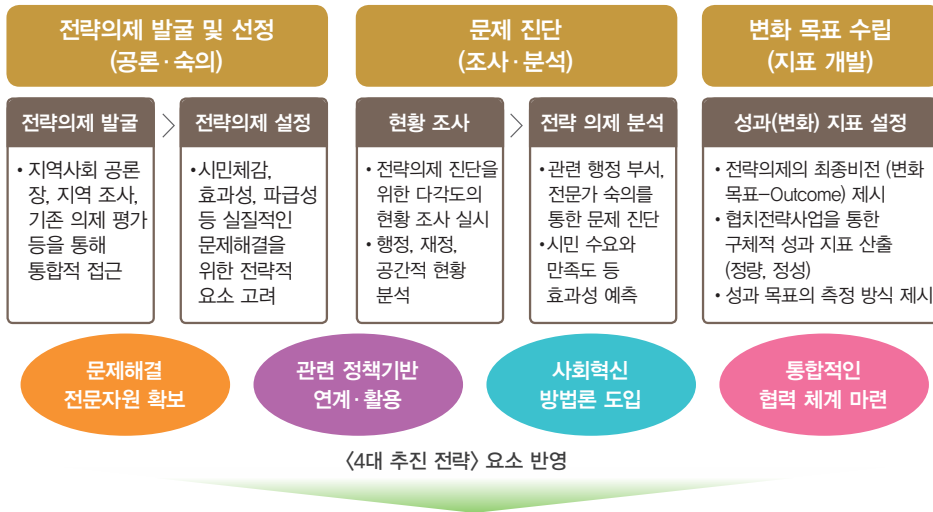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작성〉

- 개요
  - 사업 기간 : 2021. 1. 1.(금) ~ 2021. 12. 31.(금)
  - 추진 주체 : 자치구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
  - 내용 : 전략의제 선정, 문제 진단, 변화목표 등을 포함한 협치전략사업 계획 ('21년 실행)
    - ※ 불임의 신청 서류 양식 참조
  - 예산 : 서울시 지원 보조금(최대 5억원)과 자치구 일반 예산(시비 20% 이상)으로 전체 사업비 편성
-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 신청 시 계획한 사전 과제(전략의제 선정, 문제 진단, 변화 목표 수립)의 실행 완료</li> <li>② 협치전략사업에 지원되는 시비의 20% 이상 구비(자치구 일반예산) 편성</li> <li>③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협치전략사업 실행 주체의 명확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으로서 밀착된 연계 방식</li> <li>- 행정 내 (사업 총괄, 전략의제 관련) 부서, 민간 전문가, 협치조정관, 민간 파트너의 필수 참여</li> <li>- 협치전략사업 실행 과정에서 추진 조직 구성원 각각의 분명한 역할 분담 명시</li> </ul> </li> </ul>
--

- 주의 사항
  - 사업비 편성 시, 불임의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 참조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구성 개념도
- 주의 사항
  - 사업비 편성 시, 불임의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 참조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의 구성 개념도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 의미 : 자치구 협치전략사업 계획서(선정 심사 자료) 제출
  -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
  -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을 이행하여 '21년 예산으로 교부
- 신청 주체 : 자치구별 협치회의(서류 표지에 민관 대표자 각각 날인)
- 제출 기한 : 2020. 7. 31.(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 제출 방법 : 각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서울협치담당관)

## ▣ 협치전략사업 선정

### 〈선정 기준〉

기준	배점 (100점)	심사 항목
전략 수립의 타당성 (30)	10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숙의 및 공론장 운영
	10	객관·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 과정 및 결과
	10	실증 가능한 변화(성과) 목표, 성과 지표의 수립
전략 요소의 활용성 (20)	5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자원의 충분한 확보 정도
	5	자치구 내 유관한 정책 기반 및 행정부서 간 연계·활용 정도
	5	사회혁신 방법론 도입을 통한 시민 주체의 육성 기대 정도
	5	서울시정과의 정책 연계 등 통합적인 협력 체계 구축 정도
전략의 실현 가능성 (40)	10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3년 계획)과의 정합성
	10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의 규모 및 실행 능력
	10	전략 사업 종료 후 지속적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대책(예산 등)
	10	사업 추진 핵심 주체(협치조정관) 확보 여부 ※ 7.31. 기준, 채용 완료일 때 인정하며 타 직무와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10)	10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범평가 결과 반영

### 〈사업선정위원회〉

- 회의 일시 : 2020. 8. 11.(화) 예정
- 회의 구성 : 아래와 같이 총 7인 내외로 구성

구분	소속		인원
선정 위원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1인
		숙의예산담당관	1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	1인
	외부(민간)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내외

※ 사업신청 자치구는 타 자치구의 사업 발표 시 참관 가능하며, 위원회 세부 구성은 변경 가능

- 심사 대상 :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및 필수 요건을 갖춘 자치구
- 심사 서류 : 각 자치구 신청서류(사업 신청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 등)
  - 서류 접수 후 아래의 필수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 ① 사업 신청 시 계획한 사전 과제(전략의제 선정, 문제 진단, 변화 목표 수립)의 실행 완료
- ② 협치전략사업에 지원되는 시비의 20% 이상 구비(자치구 일반예산) 편성
- ③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협치전략사업 실행 주체의 명확한 제시
  - 자치구 협치회의 산하의 추진 조직(분과, 추진단, TFT 등)으로서 밀착된 연계 방식
  - 행정 내 (사업 총괄, 전략의제 관련) 부서, 민간 전문가, 협치조정관, 민간 파트너의 필수 참여
  - 협치전략사업 실행 과정에서 추진 조직 구성원 각각의 분명한 역할 분담 명시

- 접수된 협치전략사업 계획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 의뢰 가능
  - ※ 사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선정위원회에 참고 용도로 제출

○ 선정 방식

- 협치전략사업 추진 취지 설명
- 제출 서류 검토 및 선정위원 간 토론
- 사업신청 자치구 별 PPT 발표(질의 응답)
-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채점표 작성
-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 및 최종 선정
  - ※ 사업 선정 시, 신청 예산 조정 및 조건부 선정 의결 가능

○ 선정 규모 : 총 3개 구(최대 5억원 이내) 선정

- 서울시 지원 보조금은 '21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선정 결과 통보〉

- 일시 : 2020. 8. 14.(금) 예정
- 방법 : 선정 결과는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
- 내용
  - 사업선정위원회의 최종 선정 결과(최종 지원금액 및 조건부 선정 사항)
  -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등 후속 사항 안내 등
    - ※ 선정된 자치구는 조건부 선정내용, 오류사항 등을 보완한 협치전략사업 (최종)계획서를 8. 19.(수) 까지 제출

▣ 사업 승인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기구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 일정 : 2020. 8. 29.(토) 예정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총회 기간 중)
- 내용 : '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의 승인
  - 시비 보조금의 규모와 항목은 승인 이후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변경 불가



## ▣ 사업 협약

- 협약 명칭 : 2021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서울시·○○구 사업 협약
- 일정 : 2020. 12. 중 (서울특별시의회 '21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 후)
- 방식 : 서울시·○○구 간 사업협약서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협약서에 사업 추진 원칙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사항 등 교부조건 명시
  - 협치전략사업 (최종)계획서 첨부
- 협약 주체 : 서울특별시(서울시장) / 자치구(자치구 협치회의)

## ▣ 보조금 교부

- 교부 방식 : 각 자치구별 지원금 총액 일괄 교부
  - (자치구→서울시) 보조금 신청·접수 : 사업 협약 체결 직후
  - (서울시→자치구) 보조금 교부 : 2021. 1월 중
    - ※ 각종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는 추후 안내
- 보조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 (12개월 간)
  - 협치전략사업 사례 공유회, 수행 자치구 협의·간담회 등 개최 예정
    - ※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및 사업 관리
- 정산 : (자치구→서울시)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 구비의 집행결과를 포함하여 정산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를 원칙으로 함
    -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조금액은 반납 조치

## V. 기대 효과

- 지역협치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적인 협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을 실행하여 현재까지 자치구에 마련된 협치 체계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행정과 민간의 협치 역량의 강화
- 사회적경제, 로컬랩, 서울형 주민자치 등 지역 사회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활용·연계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분야 저변에 사회혁신 성과 전파

## Ⅵ. 주요 추진 일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20.2.20.
- (자치구)사업 신청서 제출 ..... '20.4.30.
- (자치구)협치전략사업 계획 수립 ..... '20.5.1~7.30.
- (자치구)협치전략사업 계획서 제출 ..... '20.7.31.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 '20.8.11.
- 선정 결과 통보 ..... '20.8.15.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20.8.29.
- (시·자치구)협약 체결 ..... '20.12월 중
- 보조금 교부 ..... '21.1월 중
- (자치구)협치전략사업 실행 ..... '21.1.1~12.31.
- (자치구)실적 및 정산보고 ..... '22.1월 중

부록1-3.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 운영계획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 운영계획

자치구 민관협치와 관련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계획수립과 실행에 대하여 과정관리와 평가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1. 추진 근거

#### ▣ 평가관리 근거

- '20년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6611,'20.1.2.)

### 2. 추진경과 및 개선방향

####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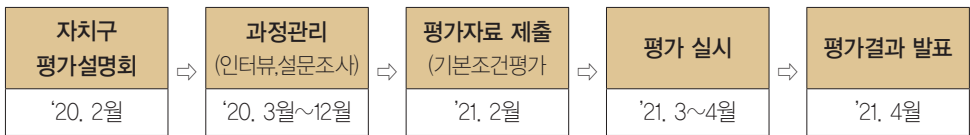
- '19년 상반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지표 개발
- '19년 하반기: '18년 구단위계획형 실행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7개구)

#### ▣ 시범평가 성과와 개선방향

- (성과) 과정관리·평가지표 구축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핵심 목표와 다양한 숙의공론과정을 체계적으로 과정관리·평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사업의 질적 관리 증진
- (성과) 일방적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기록을 통한 상호학습 체계 마련
  - 결과중심의 평가 체계가 아닌 기록을 통한 상호학습 성격의 과정관리·평가체계를 운영하여 서울시-자치구 간 상호학습의 기회를 마련
- (과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 지표 검토 필요
  - 現 평가지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조건(체계, 과정 등) 중심으로 구성
  -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변별력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검토 필요
- (과제) 자치구 평가체계 일원화 검토 필요
  - 現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적용되는 2가지 평가체계(區주민참여예산 제도평가, 구단위계획형 사업평가)에 대해 일원화가 필요

###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9개 자치구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평가시기 : '21. 4월
- 평가내용 :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등
  - (평가항목) ① 기본조건평가, ② 과정관리평가, ③ 영향평가 등 53개 세부지표 (105점)
- 평가방식 : 절대평가(5등급)
- 결과활용 : '21년 구단위계획형 및 지역사회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심사 시 결과 활용
- 추진절차



###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서울협치담당관 등
- 평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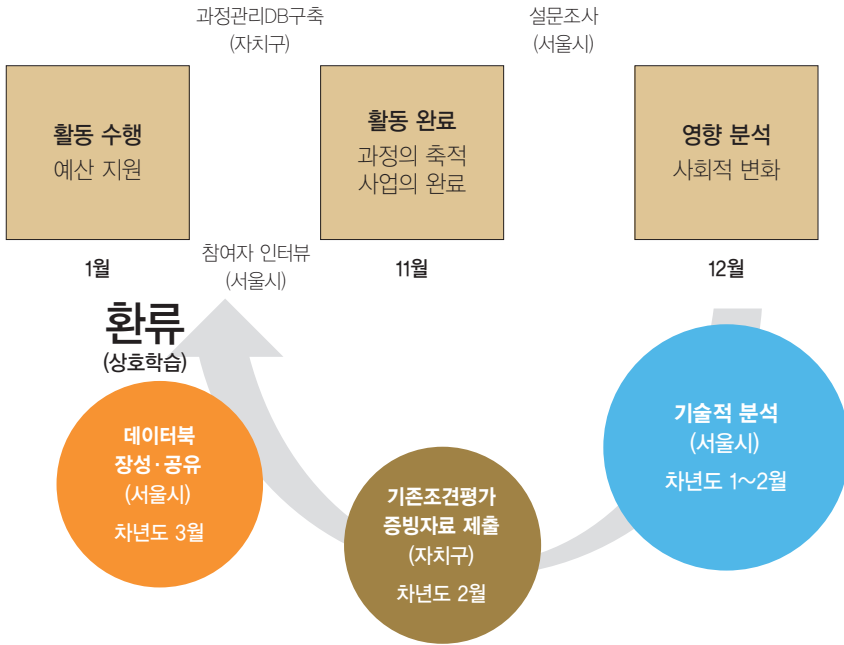
구분	평가지표	평가자
정량평가 (79점)	기본조건평가 24개 지표(55점) 과정관리평가 4개 지표(9점) 영향평가 13개 지표(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협치담당관</li> <li>- 41개 지표(79점) 평가</li> <li>• 평가위원 확인</li> </ul>
정성평가 (26점)	과정관리평가 12개 지표(2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가(5명 이내 구성)</li> </ul>

###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정량(79점)·정성(26점)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정량평가)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산출한 최종 점수를 평가위원의 확인으로 결정
  - (정성평가) 19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위원 개별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평가등급 결정 : 종합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환류계획

- 주요 과정관리 등의 내용을 데이터북으로 작성하여 공유
  - 과정관리DB, 설문조사 등 주요 과정관리 내용을 데이터북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자치구 배포



▣ 자료제출방법

〈기본조건평가〉

- 기본조건평가는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서면 평가 자료로 제공(자치구→市)
  - 제출 시기: 2021.2.
  - 제출 방법
    - ▶ 작성 양식에 따라 자료 작성 및 정리하여 공문 제출
    - ▶ 증빙자료 등은 제출자료 용량 초과 시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자료 목록'에 기재하고, 별첨자료 목록 연번과 관련지표 번호를 파일명(폴더정리)으로 하여 제출

〈과정관리평가〉

- 과정관리평가의 증빙자료(과정관리DB)를 정기적으로 제출(자치구→市)
  - 제출 시기 : 연 4회 제출 ※ 3월, 6월, 9월, 12월
  - 제출 방법 : 작성 양식에 따라 자료 작성 후 공문 제출



- 기본조건평가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14개 부문,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
    - ‘협치기반조성 영역’은 자치구에서 협치의 제도적·조직적 안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①제도적 기반, ②추진체계 구축, ③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④사회적 균형 확보, ⑤더 많은 시민의 참여 확보, ⑥체계적인 역량 강화 부문에서 15개 세부 지표로 구성함
    - ‘숙의공론 기반조성 영역’은 수많은 숙의공론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으로 ①유관부서 협력, ②타 참여 조직과의 연계, ③정치적 약속, ④협력적 리더십 부문에서 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함
    - ‘사업추진 기반조성 영역’은 다양한 부문별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기본계획 수립, ②사업 운영 모니터링, ③평가와 환류 체계 운영, ④예산집행 부문에서 5개 세부 지표로 구성함
  - 과정관리평가는 다양한 숙의공론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요소를 중심으로 6개 부문, 16개 세부 지표로 구성
    - ①내실 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②정보의 질, ③과정의 투명성, ④과정의 유용성, ⑤기회 제공의 형평성, ⑥참여자의 변화 부문으로 구성함
- ※과정관리평가영역은 과정관리DB와 정기적 인터뷰를 통해 자료 구축

#### • 과정관리DB

- 과정관리DB는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숙의공론장(회의,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함
- 과정관리DB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통합시트(Excel)를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기록함

#### • 과정관리(인터뷰)

- 6가지 부문의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뷰 질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주요 코어그룹(협치위원, 분과위원, 실행그룹 등)을 대상(FG)으로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함

- 영향평가는 지역사회혁신계획에서 궁극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3개 부문, 13개 세부 지표로 구성
  - ‘참여에서 권한으로 부문’은 민관협치의 수준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행정과 민간이 생각하는 현재의 참여 수준을 측정하고 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함
  - ‘내실있는 시민참여 부문’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변화도를 측정하고 7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함
  - ‘사회적 신뢰 부문’은 지역에서의 민관협치가 사회적 신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변화도를 측정하고 4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함



부록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서 서식

서식 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신청서

자치구 명					
협치○○구회의 (또는 협치 민·관 TFT) 대표	민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관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사전준비 기간 동안의 논의 현황	논의 기간: . . . . ~ . . . .				
	논의 주체 :				
	논의 주체 구성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기술				
'21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배경					

2020년 월 일

○○구 협치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구 협치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서식 2-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논의주체 명단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구의원
2					시의원
3					협치○○구회의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자치구 협치회의 위원 외에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논의주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부록3.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 시 첨부 서식

서식 3-1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신청서

자치구명				
제출 주체	민·관 합동 TFT(     ), 협치○○구회의(     ) ※해당란에 √ 표시 / 명단 별첨			
협의 구조	민	○-----단체 ○-----단체 ○-----전문가 ※민·민 간 협의구조를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개인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관	○-----과 ○-----과 ○-----과 ※관·관 간 협의구조를 어떤 부서(과)들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사업 개요	○목표 - ○배경 - ○내용 - ○일정			
사 업 비	총 -----천원(시비 : -----천원, 구비 : -----천원)			
민·관 대표/ 실무자	민간대표	성 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 메 일
	행정대표	성 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 메 일
	실무자(민)	성 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 메 일
실무자(관)	성 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 메 일	

2020. 00. 00

제출자 ○○구 민·관 합동TFT 또는 ○○구 협치회의(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2

### 자치구 협치회의 명단

민간		시·구의원		행정		총 인원 수	
명		명		명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기존)	회의 내 역할	구분	성별	
1					민간		
2					구의원		
3					시의원		
4					행정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인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 ※ 협치회의 구성시 민간의 비율이 70%이상을 넘어야 함.
- ※ 특정성비가 60%를 넘지 않아야 함. (위촉직 기준)

## 부록4.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목차 예시

### 1. 개요

- 1.1. 계획의 수립배경
- 1.2.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과와 한계
  - ※2기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자치구만 해당
- 1.3. 계획의 위상과 범위
- 1.4. 계획의 추진방향
- 1.5. 계획의 수립과정
  - ※계획의 수립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수립과정 요약표
- 1.6. 추진체계

### 2. 현황조사 및 분석

- 2.1. 조사 및 분석 개요
- 2.2. 민관협치 여건 분석
  - ※예시) 협치인식분석, 협치사업현황분석, 자원분석(인적, 공간적 등)
- 2.3. 관련계획 및 정책분석
  - ※예시) 구정4개년계획, 시정4개년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 2.4. 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 3. 기본구상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을 도식으로 작성

### 4. 추진과제별 계획

- 4.1. 추진과제 1

4.2. 추진과제 2

4.3. 추진과제 3

4.4. 추진과제 4

## 5. 성과평가 및 환류계획

## 6. 계획의 실현

6.1. 재원조달계획

※ 예산계획의 성격보다는 시 보조금 외 재원조달을 위해 구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재원조달계획 표 예시 추가예정)

6.2. 단계별 로드맵

## 부록5. ○○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목차 예시

### 1. 배경 및 목적

- 1.1. 수립배경
- 1.2. 전년도 추진성과 및 한계
- 1.3. 계획의 위상과 범위
- 1.4. 계획의 추진방향
- 1.5. 계획의 수립과정  
※계획의 수립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수립과정 요약표
- 1.6. 추진체계

### 2.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추진과제 중 「협치기반 구축 계획」과 「분야별 협치과제 계획」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 2.1. 추진과제 1
  - 2.1.1. 의제별 실행계획 A  
※부록5. 의제별 실행계획 세부목차 예시 참고
  - 2.1.1. 의제별 실행계획 B
  - 2.1.1. 의제별 실행계획 C
- 2.2. 추진과제 2
  - 2.2.1. 의제별 실행계획 D
  - 2.2.2. 의제별 실행계획 E
  - 2.2.3. 의제별 실행계획 F
  - 2.2.4. 의제별 실행계획 G
- 2.3. 추진과제 3
  - 2.3.1. 의제별 실행계획 H
  - 2.3.2. 의제별 실행계획 I

### 3. 성과평가계획

※ 성과평가계획 등을 표, 도식으로 작성 (부록5. 의제별 실행계획 세부목차 예시 참고)

### 4. 예산계획

#### 4.1. 예산 성격에 따른 구분(경상/ 자본 예산 구분, 시 보조금에 한함)

(단위 : 천원)

	시 보조금	경상 보조	자본 보조
금액			
비율	100%	%	%

#### 4.2. 자원 조달에 따른 구분(시/구 예산 구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 4.3. 의제별 예산계획



## 부록6. 의제별 실행계획 세부목차 예시

### 5-3. 협치동 도시재생 상생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주요 설명을 쓰는 부분 사업에 대한 주요 설명을 쓰는 부분 사업에 대한 주요 설명을 쓰는 부분 사업에 대한 주요 설명을 쓰는 부분

추진과제-5. 공동체지속가능성 회복 _ 의제 3. 협치동도시재생 상생프로젝트			
사업추진시기		예산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민관협력체계

※참고

- 해당의제를 실행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구성내용을 서술
- 참여하는 행정부서(주무부서 및 협력부서 등)는 어디인지, 해당 행정부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 참여하는 민간주체는 어디인지, 해당 민간주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서술

#### 1. 추진 배경과 필요성

#### 2.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3. 전년도 추진경과(필요시)

3-1. 사업 실행 경과

3-2. 성과 및 개선점

#### 4. 세부추진 계획

4-1. 추진방법

4-2. 추진일정(프로세스)

5.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1. 성과지표

5-2.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6. 소요예산

예산과목		산출내역	구비	시비	국비	기타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					
○○○○○	○○○○○					

부록7. 2020-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2020-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 목 차

<b>제1장 개요</b> .....	139
제1절 법적근거 및 제정의 목적 .....	139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위상 .....	139
제3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	139
<b>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 내용</b> .....	140
제1절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	140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구성 .....	140
제3절 계획 내 의제에 대한 성격 정의 .....	141
<b>제3장 보조금 운영 방법</b> .....	141
제1절 운영의 기본원칙 .....	141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	142
제3절 사업비 변경 기준 .....	144
제4절 자치구의 재원 조달 노력 .....	145
<b>제4장 과정관리와 평가</b> .....	145
제1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따른 과정관리와 평가 .....	145

## 제1장 개요

### 제1절 법적근거 및 제정의 목적

- 1.1.1 이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7조 및 제2항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자치구가 계획수립 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사항,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보조금 운영 방법,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환류 방안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1.2 이 운영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서울시가 발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의 내용에 따른다.

###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위상

- 1.2.1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략계획이다.
- 1.2.2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과정과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 1.2.3 자치구 협치와 관련한 비전, 정책, 의제, 사업 등을 민·관이 공동으로 발굴·결정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 제3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 1.3.1 자치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양한 분야·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수립
  - (2)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권 보장
  - (3) 원활한 정보 공개와 소통
  - (4) 협치 수준 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과 이행

##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 내용

### 제1절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2.1.1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과 운영은 각 자치구에서 제정한 『00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이하 자치구 협치조례)』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

- (1) 민간위원의 비율이 70%이상을 넘어야 한다.
- (2) 선출직 공무원(구청장, 구의원 등)의 경우 행정위원으로 본다.
- (3)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① 특정 성별 비율의 대상은 위촉직을 기준으로 한다.

###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구성

2.2.1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부록)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설명서(이하 과정설명서)』로 구성된다.

2.2.2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제출 시기는 서울시 운영계획에 따른다.
- (2) 「기본계획」의 만료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기존에 작성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 (3)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자치구 「협치기반구축사업」과 「분야별 협치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②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개선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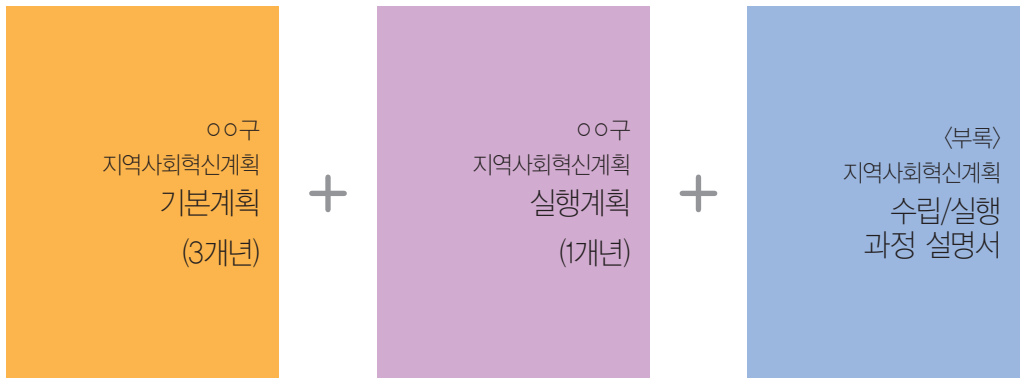
2.2.3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 (1) 「실행계획」의 1년 단위로 수립한다.
- (2) 3개년 「기본계획」의 1년차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하며, 「실행계획」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실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협치기반구축 사업계획」과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전년도 평가를 통해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다음년도 「실행계획」과 「기본계획(기존 기본계획의 시효가 만료하는 자치구만 해당)」의 수립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2.2.4 「과정 설명서」는 당해년도 계획수립과정과 전년도 실행과정에 대해 기술하며, 부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 제3절 계획 내 의제에 대한 성격 정의

2.3.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는 아래와 같은 성격이 충족되는 의제여야 한다.

- (1) (개방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 (2) (숙의성) 발굴한 의제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3) (공익성) 특정 소수단체 또는 주민그룹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여야 한다.
- (4) (협력성)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의제여야 한다.

## 제3장 보조금 운영 방법

### 제1절 운영의 기본원칙

3.1.1 본 지침은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1.2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 조례」에 따른다.

##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3.2.1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기관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 ①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외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주민 공유공간 외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의 단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 ① 자치구 공공청사의 단순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위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단, 공공청사의 특정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기능변경하거나, 기존 주민 공유공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사업비는 가능하다.
- (3)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 ① 단체 또는 법인의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 (5) 법령으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 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산은 매년 시-구 간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이므로 상위 법령에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 \* 공공기관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공공청사 :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간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 3.2.2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편성 시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인건비성 경비(회의 수당, 강사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가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특정 단체 또는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편성이 불가하다.
  - ② 사업 추진 시 민·관 협력을 촉진·관리·조정·자문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③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2)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행정이 독자적으로 시설비 등을 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 ②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편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전반을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의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세부사업별 총 예산의 70%를 넘을 수 없다.
- (3) 민간이전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행정이 일방적으로 민간이전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 ② 사업 성격상 민간이전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 ③ 민간이전 편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전반에 대해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④ 민간이전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세부사업별 총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다.

- ⑤ 민간이전이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
- (4)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 ① 재산성 물품구입의 경우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구입한 재산성 물품은 '구' 소유로 귀속하며, 자치구 물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한다.
- (5)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 ① 사업비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편성이 불가하다.
  - ②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가능하며 가급적 '구' 예산(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명의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고)

### 제3절 사업비 변경 기준

- 3.3.1 보조금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3.3.2 자치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사업 총액의 10%이상 '변경'(사업 내 예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중요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3 자치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보조금 사업 총액의 10%미만의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 (1) 자치구 협치회의의 승인을 득하기에 시급한 예산'변경' 사안일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로부터 예산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단위 (자치구 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예산의 변경을 결정 할 수 있다.
  - (2) 10%미만의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 분기별로 통보한다.
- 3.3.4 예산의 내용에 따른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 간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이 불가능 하다.
  - (1) 예산의 내용에 따른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따른 예산 편성 내용은 「실행

계획」의 예산계획 부분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자본보조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다.

## 제4절 자치구의 자원 조달 노력

3.4.1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단순히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 전반의 협치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더불어 자치구는 다양한 협치정책들과의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의 자체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원 조달 구분(시, 구의 예산 구분)에 따른 예산 편성 내용은 「실행계획」의 예산계획 부분에 다음 표의 형식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100%

## 제4장 과정관리와 평가

### 제1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따른 과정관리와 평가

4.1.1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전년도 추진 결과 등에 대해 과정관리와 평가를 실시한다.

4.1.2 서울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체계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4.1.3 서울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려책(인센티브)을 적용할 수 있다.

4.1.4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와 평가 운영 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부록8. 협약서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지원 협약서(안)

「2020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하 “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와 “구” 간에 「2020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구”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으로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 및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구 협치회의 및 서울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협의·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지역사회혁신계획 3년 기본계획과 1년차 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제3조(지원내용)** “시”는 “구”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 사업명 : 2020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실행 지원
-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 지원금액(보조금) : 금 1,000,000,000원 (금일십억원)
- ▷ 사업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별첨

**제4조(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실행 원칙)** “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수립, 주민들의 참여권 보장, 원활한 정보 공개·소통, 협치 수준 진단·개선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① “구”는 “시”와 협의·조정을 완료하고 자치구 협치회의 및 서울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토대로 “시”와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구”와 “자치구 협치회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 협치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포함된 부문별 사업들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는 자치구 협치회의로 하여금 별도의 부문별 또는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진행) ① “구”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따라 자치구 협치회의의 관리·감독아래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하며 자치구 협치회의는 필요시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 내부지침 등을 만들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계획 이행 노력) 자치구 협치회의가 검토하고 서울시시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에 포함된 사업은 “구”의 재원조달 계획(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실행 지원, 보조금 정산 및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

② “구”는 “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구”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와 협조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한다.

④ “구”는 사업 수행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고, “시”는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⑤ “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최종실적(결과 및 정산) 보고를 “시”에 해야 한다.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는 제5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토대로 “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사, 조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구”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① “구”는 “사업” 진행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한다.

② “시”, “구”는 “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과 함께 “최종 실적보고서”를 “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히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 “구”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구”와 협의·조정 최종결과에 따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보조금을 일시에 “구”로 교부한다.

② “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직접 또는 민간이전 방식 등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구”가 보조금을 민간이전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별도의 집행지침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집행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하며, 각 사업 간 예산 변경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

⑤ “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을 변경(전용)과 보조금 사업총액의 10%이상의 ‘변경사용’을 포함함)하여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중요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와 사전협의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구”는 기 제출한 세부사업목록의 각 사업 간 예산변경과 경상보조·자본보조 간 예산변경은 불가하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사업총액의 10% 미만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의 결정에 의하고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⑦ “구”는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보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전된 금액을 환수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구”는 자치구 협치회의의 결정으로 이 사실을 “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후 잔여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잔여사업비를 반환하는 때

“시”로 반납한다.

③ 협약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국가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구”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재정지원을 받은 이후 당초 “구”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세부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기로 한 내역을 다른 재정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 관련 집행 내역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해지, 갱신) ①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의 변경은 “시”와 “구”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 “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40호, 2017.7.13., 일부개정) 제33조 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가 법령이나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구”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자치구 협치회의”를 구성하는 모든 민간 위원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는 ‘자치구 협치회의’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며, 상당기간을 정하여 “구”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구”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정산 및 잔여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

⑤ 본 협약을 갱신할 경우 본 협약서 내용중 변경되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2부를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의 본 협약서 말미에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과 같이 본 협약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한 “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구”는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정하는 자료 하여금 “구”에 출장하여 관련 서류 등을 확인·조사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시”는 “사업”수행이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구”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구”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의 중요재산 중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 등의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진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40호, 2017.7.13., 일부개정),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구”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이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 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1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직인)

〈“구”〉 00구 (서울특별시 00구 000로 000)

협치회의 관대표 000구청장(000) (직인)

협치회의 민대표 000000(000) (날인 또는 서명)



간행물명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서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발행인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발행일	2020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디자인	플러스(PLUS)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EÓUL·U  
너와 나의 서울

---